고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창군 공약실천 기본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16 년 2월 16일

고창군 조례 제 2227 호

제542호

고창군 공약실천 기본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수가 군민과 약속한 사항을 실천함에 있어 군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공약사항의 효율적 추진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공약사항"이란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거과정에서 군 민에게 실천하기로 공표한 사항을 취임 이후 제5조에 따라 확정한 것을 말한다.
- 2. "공약사업"이란 군수가 공약사항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추진.관리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4. "주관부서"란 공약사업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 5. "협조부서"란 공약사업을 주관부서와 함께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 6. "매니페스토운동"이란 공약이 추구하는 가치, 실천과정과 목표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참공약 실천 운동을 말한다.

- 제3조(권리와 책무) ① 군민은 군수의 공약사항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제1항의 검증 및 평가와 관련된 군민의 요청에 적극 협력 하여야 하며, 공약이 군민과의 공적 계약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의 실천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제4조(관리체계)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책임자를 정한다.
 - 1. 총괄 관리 및 조정은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예산실장이 수행한다.
 - 2. 공약사항에 대한 주관부서는 총괄부서의 장이 지정한다.
 - 3.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담당을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그 실적을 관리한다.
- 제5조(공약사항의 확정) ① 군수는 취임 후 선거 공약자료와 선거과정에 서 표출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공약사항안이 작성되면 주관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공약사업별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검토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법률적 검토(자치법규 포함)
 - 2. 사업의 적정성
 - 3. 임기 내 실천 가능성 또는 임기 내 실천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장기계획으로의 실천 가능성
 - 4. 사업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 ③ 총괄부서에서는 제2항의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공약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조정하고,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군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보고 된 내용을 검토한 후 공약사항을 취임 후 30일 이내에 최종 확정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관리번호를 지정하여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실천계획의 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확정된 공약 사항의 실천계획을 30일 이내에 수립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실천계획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 1. 공약 취지 부합 여부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2. 공약사항과 현재 추진 중인 유사사업과의 절충 가능성
- 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바탕으로 한 정확한 현황 분석과 전망
 - 가. 광범위한 자료, 지식, 경험 등의 활용
- 나. 관련부서, 전문연구기관 등의 의견수렴
- 다. 상호 상반된 이해관계의 실익에 대한 비교 검토
- 4.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 계획과의 조화
- 5. 사업기간별 효율적인 실천방안 강구
- 6.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대안 또는 해결방안의 강구
- 7.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및 재원 조달 대책 마련
- 8. 법제 및 조직과 인력의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
-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사업별 실 천계획을 종합.조정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취임 후 100 일 이내에 실천계획으로 확정하고 이를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실천계획의 변경)** ① 실천계획 확정 후 상황과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부득이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 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사항은 그 사유와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총괄 부서의 장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연도별 추진계획 작성)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을 근거로 매년

초에 별지 제3호식에 따른 연도별 추진계획을 작성하고 공약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9조(추진상황 점검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추진실적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를 다음 분기 개시 후 10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다.
 -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결과에 대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부진 또는 문제 사업, 문제가 예상되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현지 확인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등) ① 군수는 공약사항의 성실한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② 평가단은 실천계획의 이행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 건의.자문함으로써 공약사항이 성실히 이행될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③ 평가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④ 단원은 특정정당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활동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1. 공약사항과 관련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2. 일반 군민 중 공약 이행 평가를 성실히 수행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 ⑤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선출한다. 단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군수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단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 단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⑦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1.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 2. 평가단의 목적, 운영 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3. 품위손상, 회의에 장기불참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 4.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 제11조(평가시기) 공약이행 평가는 매년 12월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단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연 1회에 한정하여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평가방법) ① 공약이행 평가는 공약사항에 대하여 당초 취지대로 이행하였는지 사업별로 진척정도, 사업비 확보, 집행비율 등을 서면평가 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 ② 평가단은 공약이행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 군민을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공약사항의 변경) 군수는 제5조에 따라 확정된 공약사항이 상황 과 여건의 변화에 따라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평가단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변경된 사항은 30일 이내에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군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제14조(수당 등) 평가단 회의에 참석한 단원과 그 외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고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평가결과 등의 공개) 군수는 공약사항의 확정 또는 변경, 실천계획, 실천계획의 변경사항, 추진상황, 공약이행 평가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군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제16조(평가결과의 환류) 군수는 평가단에서 제출한 평가결과 및 건의 사항 등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약사항 추 진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들어 평가단에 통보 하여야 한다.
- **제17조(매니페스토운동 협조)** 군수는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매니페스토운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군수 공약 검토의견서(제5조제2항 관련)

공	남 약 명									
	① 추진배경									
	② 사업규모									
	③ 추진기간									
사 업	④ 재 원	구분 계	계	기투자	소계	년 년	임기내 년	년	년	임기후
개	조달계획	국비								
요	(백만원)	<u>도비</u> 군비								
		기타								
	⑤ 지원근거									
	⑥ 기대효과									
7	검 토 의 견									
8 3	검 토 결 과		내 완료 내 기반	·조성			내 착 : 불가능		H 크	
9	검 토 자	직위 :			성명 :		(5	<u>)</u>) (1	5 *)

〈검토의견서 작성요령〉

- ① 추진배경: 사업의 목적 및 추진배경 기술
- ② 사업규모: 사업추진 시 적정 사업규모를 결정 기재
- ③ 추진기간: 사업의 적정 추진기간을 작성
- ④ 재원조달계획 : 투자 사업비를 재원별 연도별로 구분 작성
- ⑤ 지원근거 :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지원근거 법령을 상세히 기재
- ⑥ 기대효과 :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를 개조식으로 기재
- ① 검토의견: 공약사업의 실천가능성, 적법성, 기존 사업과의 연계성, 투자비 및 효과 비교, 사업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기타 사업 추진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상세히 작성
- ⑧ 검토결과
 - 임기 내 완료
 - 추진기간이 비교적 단기(1~3년)인 사업과 기 추진 중인 계속사업으로 임기 내 완료가 가능한 사업
 - 당면 현안사업으로 추진할 사업
 - 임기 내 착수
 - 추진기간이 중기(4~10년)로 단기 완료가 곤란한 사업
 - 가용재원의 확보 등을 고려하여 추진해야 할 사업
 - 임기 내 기반 조성
 - 추진기간이 장기간(10년 이상)으로 임기 내 완료가 불가능하며 기반 조성이 필요한 사업
 - 중앙에 건의하거나 지역 여론화를 통하여 추진해야할 사업
 - 추진 불가능 사업
 - 지역여건 및 실정을 감안할 때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 소요사업비가 과다하여 실현가능성이 없거나 사업비에 비하여 효과가 없는 사업
 - 관련법령 검토결과 추진 불가 사업
- ⑨ 검토자 : 소관부서의 장

[별지 제2호서식]

군수 공약 실천계획서(제6조제1항 관련)

관리 번호							주관 부서			협조 부서		
 완료/	 시기		L 총사	 업비			<u></u> 사	⊥ 업기간			 사업	 구분
							~		등기,장기)			계속
11 사 업	명	•								'		
2 사 업 도	1	000										
③ 사 업 가	네 요	000										
		구 분	본 합	합계	기-	투자	소계	년	임기내 년	년	년	임기후
④ 연도별투 (백만원/(총 7 국 브 도 브										
		<u>시</u> 기 E	 									
[F]	실행 방법											
5 추진전략	추진 계획											
6기대효	호 과	0										
기참고 시	ㅏ 항		면 기관 면 법령			관련?	다 연택	락처				

[별지 3호 서식]

군수 공약 연도별 추진계획 (제8조 관련)

관 번	리 호					(20	•	현재)	주관 부서				혈조· 쿠서·		
	구분 :차별)	연 ₋	도별	목표				추	진	계호	틱	l		
	1분	7]													
0	2분	7]													
() 년	3분	7]													
	4분	7]													
	1분	7]													
0	2분	7]													
년	3분	7]													
	4분	7]													
	1분	기													
	2분	7]													
) 년	3분	기													
	4분	기													
	1분	기													
	2분	기													
() 년	3분														
	4분	기													

[별지 4호 서식]

군수 공약 추진실적 (제9조제1항 관련)

(○○ 실과소)

1. 총평

2. 총괄

(단위: 건)

호 기 시	ol ⊐		추 진 중	•	口はた人	비고
총 건 수	완 료	소 계	정 상	부 진	미착수	비고
※ 세부공약 건수						

O 완료

관리번호	제 목	완료연월일

O 부진 및 미착수

관리번호	제 목	비고
		"부 진" "미착수" ()로 구분

※ 미착수: 착수시기 미도래의 경우에는 착수연도를 기재하고, 시기 미정의 경우는 미정, 계속 검토 중인 경우에는 검토로 구분하여 ()에 표기할 것

단 위 사 업 명

관리 번호				(2	0 .	. 현	재)	주관 부서		<u> </u>	협 조 부 서		
임	기중	목표			업비				추진성	상황		추진	l율
착수,추	진(%),완료	*	H시 <u>사</u> 이브	브 <u>업"비예산":</u>	백만원 으로표기	완료	2	정상	부진	미착수	:	
□ 사입	법개요	2											
((i	강초	실천계획	텍 내용	과 같	게 작	성)							
□ 추전 ○투													
\(\frac{\(\pi\)}{\(\frac{1}{2}\)}	사업비 백만원)	※ 당취	예산 실천계	확보계]획 과 같게 ?	작성			예신	확보실	<u></u> 적		
 연도		계		도비	군비	기타	7	계	국비	도비	군비	기타	
총(
기투	·자 년												
	년												
	년 11												
임.	년 기후											<u> </u>	
	···	세부추진	내연					'					
	1 = '			テァコ	11 = 1								
구틥		※ 당초	세부 실천계획	수신거 탁 내용과	왹 같게 절	<u></u> 작성			세부	추진실	실적 ———		
	년												
	년 년												
	<u>년</u> 년												
□ 군^		및 대책											
	<u> </u>	TI 기 수											
□ 향투	수수	진계획											
0													

[별지 제5호서식]

<u>공약 평가표(제10조제2항 관련)</u>

평가기준 및 내용		7	채 점		이유 또는 의견	
청시기군 곳 대형	2	4	6	8	10	이규 모든 의견
(지속 가능성)목표가 고창군의 미래지향적인 비전 을 제시하고 있다						
(예산 효율성)낭비성, 선심성이 아닌 효율적 예산 사용을 추구한다						
(자치역량 강화)자치역량강화를 위해 추진과정을 공개하고 민·관 협력을 추구한다						
(지역성)고창군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지역의 독특 한 발전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공약이다						
(구체성)목표 달성을 위한 재원조달방법이 구체적 이며 실현가능하다						
(측정가능성)공약 목표의 달성여부가 구체적인 수 치나 지표로 잘 나타나 있다						
(달성가능성)공약 실현 방법(추진방식 등)이 현실 적으로 실천가능하다						
(적실성)군민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시간계획성)공약실현을 위한 단계별 시간계획과 목표달성 기한이 잘 나타나 있다						
(이행평가)이행평가서 등을 군민들이 이해하기 쉽 게 제공하고 있다						
총 계(100점 만점)						

채점자 성명: (인)

※ 채점방식: 10점(매우 그러함), 8점(약간 그러함), 6점(보통임), 4점(별로 그렇지 않음), 2점(전혀 그렇지 않음)

고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창군 조직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16 년 2월 16일

고창군 조례 제 2228 호

고창군 조직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제1조(「고창군 상징물운영관리 조례」의 개정) 고창군 상징물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행정지원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지역전략과장"을 "농업진흥과장"으로 한다.

제2조(「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 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안정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6조제6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제30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고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고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기금업무담당주사"를 "기금업무팀장"으로 한다.

제4조(「고창군 지역정보화 조례」의 개정) 고창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정보통신담당"을 "정보통신팀장"으로 한다.

- 제5조(「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의 개정)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7조제4항 중 "관광업무담당"을 "관광업무팀장"으로 한다.
- 제6조(「고창군 지역경제 활성화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고창군 지역경제 활성화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주사로"를 "팀장으로"로 한다.
- 제7조(「고창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의 개정) 고창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 중 "담당주사를"을 "담당팀장을"로 한다.

- 제8조(「고창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범 위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고창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8항 중 "경리복식담당"을 "경리팀장"으로 한다.
- 제9조(「고창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고창군 납세 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납세자보호담당"을 각각 "납세자보호팀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납세자보호담당"을 각각 "납세자보호팀장"으로 한다.

제29조제6항 중 "납세자보호담당"을 각각 "납세자보호팀장"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납세자보호담당"을 각각 "납세자보호팀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10호 서식,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별지 1부터 별지 6까지와 같이 한다.

제10조(「고창군 여비 조례」의 개정) 고창군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비고 : 1.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고창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의 개정) 고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부표1, 별지 제3호서식 부표2를 각각 별지 7부터 별지 9까지와 같이 한다.

제12조(「고창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의 개정) 고창군 재난관리 기금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 중 "복구지원담당"을 "복구지원팀장"으로 한다.

제13조(「고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의 개정) 고창군 재난안전대 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별표 7을 별지 10과 같이 한다.

- 제14조(「고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고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축산과장, 지역전략과장"을 "축산과장"으로 한다.
- 제15조(「고창군 복분자선연 웰빙프라자 운영관리 조례」의 개정) 고창군 복분자선연 웰빙프라자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 중 "실무담당 주사로"를 "실무팀장으로"로 한다.
- 제16조(「고창군 계획 조례」의 개정) 고창군 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 중 "업무담당"을 "업무팀장"으로 한다.

제17조(「고창군 유용미생물 배양장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고창군 유용미생물 배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 11 및 별지 12와 같이 한다.

제18조(「고창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고창군 체육진 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체육진흥담당 주사가"를 "체육진흥팀장이"로 한다.

- 제19조(「고창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 조례」의 개정) 고창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 13와 같이 한다.
- 제20조(「고창군 부정수도사용신고 포상금지급 조례」의 개정) 고창군 부정

수도사용신고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14과 같이 한다.

제21조(「고창군 생활폐기물 등 처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고창군 생활폐기물 등 처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환경보호과"를 "환경시설사업소"로 한다.

별표 3을 별지 15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시행 후 2016년 2월 29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지 1]

■ 고창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과세처분	・세무조	사 중지명령 및	Į 시2	정・소	명요-	구서	
문서번호 : 수 신 : 제 목 : 과세		사중지 및 시정·소명요구		팀 장	납세자5	보호관	단체장
		래 (예상) 과세처분·세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		하여 과세	처분중지	명령•	세무조사중지명령 및
대	주 소 (사업장)				전화	화번호	
상	상 호		사업자	등록번호			
자	성 명		생년월	일(남.여)			
(예상)과세처분 또는 세무조사 내용							
과세처분・세무 조사중지 또는 시정요구・소명							
요구 사유							
과세처분·세무 조사중지 내용 또는 시정요구· 소명요구 내용							
납세자보호관	난 (인)			년	월	일	

210mm×297mm(일반용지 60 g / m²)

[별지 2]

■ 고창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별지 제4호서식]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서	}			
문서번호 : 수 신 : 제 목 : 고충민	세무부서장 원에 대한 의견조회		팀전)- -	납세자보호관
초처분에 관한 서	원인으로부터 고충민원이 제기 류를 첨부하여 회보하여 주시기 정하고 그 결과를	바랍니다. 다민	<u>나</u> , 당해 고	충의 내	
주 소 민 (사업장) 원 상 호		기시키드크피	÷		전화 번호
원 상 호 인 성 명		사업자등록번 생년월일(남			
고 충 내 용					
첨부 : 고충민원 납세자보호관			년	월	일

[별지 3]

■ 고창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별지 제5호서식]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및 처리결과 통보서												
참 3	진 : 납세 [,] 조 : 목 : 고충	민원여	호관 게 대한 의견 및 인이 제출한 고충	같이 의견(²	팀장	하였음)을 통	세무부서장 보합니다.				
민 원 인	주 (사 업 상 성	소 장) 호 명				자 등 록 월 일		<u> </u>				
고 충 내 용												
의견 및 처리내용												
첨부	: 경정결	의서	등 관계증빙서류			Ę	<u> </u> 월	ļ.	일			
				세무투	^브 서장	(인)						

[별지 4]

■ 고창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별지 제6호서식]

	납	세	자	보	호	위	원	회	심	의	자	豆	
									팀장	납세지	·보호관		단체장
(접수번호 :	:)							L					
민	주 소 (사업장)												
원 인	상 호	-				사 업	자 등	등 록	번 호				
<u>. </u>	성 명					생 년	월	일	(남.여)				
고충요지													
처분내용													
주무과의 견													
심 리 · 판 단	가. 쟁 점 나. 사실된 다. 관련법 라. 심리의 ※별지작/	ქ령 니견											
첨부서류	: 1. 2.												

[별지 5]

■ 고창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별지 제10호서식]

납세기	자권리헌장 규정의 준수 및 이	행여부	심사서		
		팀 장	납세자보호	.관	단체장
작성일자	:				
구분	주요 심사항목		심 사	· 결 ɔ̄	각
	1. 고지서(공시송달, 독촉장송달 포함)송달 적정여부				
징수	2. 압류·압류재산매각절차 준수여부				
분야	3. 출국금지 · 여권발급제한 적정여부				
포악	4.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 신용정보업자 제공 적정여부				
	5. 환급기한 준수여부, 물납수용여부등				
א או	0. 20/12 27 71/ 20/ 0 770				
세원	 1. 고지전과세자료처리 결과통지절차 준수여부				
관리	2. 과세자료 해명안내문 발송절차 준수여부				
분야	3. 기 타				
<u>ш</u> ,					
	1. 세무조사 사전통지 이행여부 및 납세자권리				
7 1	헌장 교부여부 2. 조사연기신청 수용여부 및 거부 적정여부				
조사	3. 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여부				
분야	4. 중복조사금지규정 위반여부				
	5. 세무조사결과 통지여부				
	6. 기 타				
	1. 납세자의 성실성 및 세무관서 제출자료에				
	대한 진실성 추정 침해여부 2.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보호를 받을 권리 침해				
1 .1	2. 역사(8조의 대한 자글조오글 분글 전다 함에) 여부				
기타	3.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				
	을 권리 침해여부				
	4. 위법 · 부당한 처분에 대한 적법하고 신속하				
a) អ	게 구제받을 권리 침해여부				
첨 부	납세자 권리침해 사례 및 구제방법				

[별지 6]

■ 고창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지방/	세행정 제도개선 의견서			
		팀장	납세자보호관	단체장
작성일지	s} ·			
제	목 :			
현				
항				
문 제 점				
개				
선				
방				
안				
7]				
대 효				
ই				
과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

[별지 7]

■ 고창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제7조관련)

수 신:고창군수

참 조:재무과장

발 신:

	н	っ 入	-	징 수 액	포상금	비고	
구	분	건 수	합 계	본 세	가산금	포상금	7, 1
ö ^l -	계						
	소 계						
과년도 체납액	1년경과						
장수	2년경과						
	3년이상 경과						
	소 계						
숨은세원	탈루 · 은닉세 원						
발 굴	무단점용						
	세입증대						

첨 부 1. 과년도 체납액 징수내역 1부

2. 숨은세원 발굴내역 1부

[별지 8]

■ 고창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별지 제3호서식 부표1]

과년도 체납액 징수내역

재무과장 (인)

	징	f	<u> </u>	자			징 수 액		7) 人	포상금	거리	내은행
소	속	직	급	성	명	합 계	본 세	가산금	건 수	청구액	은행명	계좌번호

[별지 9]

■ 고창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별지 제3호서식 부표2]

숨은세원 발굴내역

재무과장 (인)

	부	과자(제보	자)	과 목	발 굴		징 수	, ,	포상금	거리	개은행
소 :	속	직 위 (주소)	성 명	(세목)	세 액	구 분	월 일	건 수	청구액	은행명	계좌번호

^{※ &}quot;구분" 란에는 미등기, 탈루·은닉세원, 무단점용, 세외수입증대 등을 표시

[별지 10]

■ 고창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 [별표 7]

대응단계 실무반 편성기준(제9조제3항 관련)

1. 조직 및 임무

구 분	담당업무
총괄조정관	○ 기획예산실장은 대응단계에서부터 재난 상황실 업무를 총괄하고 차장을 보좌
통제관	○ 총괄조정관 보좌
상황실장 1. 상 사하고기티 ·	○ 상황총괄반 업무총괄 ○ 통제관 보좌
항 항 ** 말 반	(3명) ○ 고창군기반보호 통합상황실 운영
상황(분석)·다 : (3명)	[책팀 ○ 고창군대책본부 가동(대체자원 지정 및 관리·투입 협조·지원 등) ○ 현장수습대책반 대처사항 종합분석·관리 ○ 경찰·지자체 보고체계 구축 및 지휘권 확보 ○ 민심동향 및 미담사례 확인 ○ 관련 유관기관의 협조사항 점검·관리 ○ 재난 예·경보발령 및 방송 요청 ○ 재난사태 선포·건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 사태 장기화 대한 대책 강구사항 점검 등
보고서작성팀	: (2명) ○ 실시간 종합상황보고서 작성
2. 치안 및 구조 구급대책반 (2명)	○ 불법유형에 따른 종합 대응 ○ 주요시설물 보호 조치 ○ 공권력 투입, 질서유지 ○ 긴급 인명구조 및 재산보호 등
3. 행정지원반 (2명)	○ 의회보고, 본부장·차장 등 특별지시사항 처리 ○ 경찰력 배치 점검 ○ 지역대책본부장 지휘 지원 ○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및 방문자료 작성
4. 공보지원반 (2명)	○ 재난수습을 위한 보도지원 ○ 각종 보도자료 작성·배포 ○ TV, 라디오 인터뷰 등

※ 총괄조정관은 상황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상황에 따라 반 편성 및 반별 인원수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지 11]

■ 고창군 유용미생물 배양장 관리 운영 조례 [별지 제5호서식]

유용미생물 생산 및 재고 대장

담당자 팀 장 과 장

단위: 20 ℓ/통 10ℓ/팩

월/일	~ 근	생 산 량		핀	판 매 량			무상공급 및 변질			재 고 량		
년/ <u>현</u>	종 류	리터	팩	통	리터	팩	통	리터	팩	통	리터	팩	통
	EM												
	광합성균												
	고초균												
	유산균												
	효모균												

[별지 12]

■ 고창군 유용미생물 배양장 관리 운영 조례 [별지 제6호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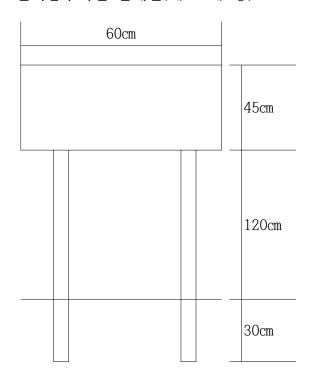
유용미생물 소모품 대장

						담당지	}	팀 장	과	장	
٥١/ <u>٨</u> ١	ス モ	구 입				사 용			재 고		
월/일	종 류	균	배지	팩	균	배지	팩	균	배지	팩	
	EM										
	광합성균										
	고초균										
	유산균										
	효모균										

[별지 13]

■ 고창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 조례 [별표]

간이급수시설 안내판(제5조제1항)



재질 및 두께 : 5mm내외의 스테인레스 재질

바 탕 색:흰 색 글 씨:청 색

0 내 용 문

알 림

- 1. 이 곳은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상수도(또는 소규모급수시설) 취수원입니다.
- 2. 이 곳에서는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하여 일체의 수질오염행위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 관리번호 :
 - 0 위 치:
 - 시설용량 :
- * 수질오염 및 시설이상 발견시 연락처 :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

(전화: 560 - ○○○○)

[별지 14]

■ 고창군 부정수도사용신고 포상금지급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부 정 수 도 사 용 신 고 처 리 대 장

결		재	일련	신고	신	고 자		부정	급수사	용자	조사	내용
과장	팀장	취급 자	번호	월일	주	소	성명	위치	내용	성명	위반 내용	금액

[별지 15]

■ 고창군 생활폐기물 등 처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별표 3]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제10조제5항 관련)

15cm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쓰 레 기 봉 투(20ℓ) - 일 반 용 -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54.5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는 후 배출하여 CM야 수거합니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고 창 군 수 연락처 : 고창군 환경시설사업소 (전화 560-〇〇〇)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지 45cm

15cm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쓰 레 기 봉 투(20ℓ) - 공 공 용 -

54.5 cm

- 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 2. 이 봉투는 가로청소 및 공공목적에 의한 쓰레기를 담는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 3. 이 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 창 군 수

연락처 : 고창군 환경시설사업소 (전화 560-○○○)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지

45cm

15cm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20ℓ)

- 1. 음식물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십시
- 2.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요령

O최대한 물을 제거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음식물만 배출 O통무우, 통배추, 통호박등은 깍두기 크기로 잘라서 배출

- ※ 비닐봉투, 병뚜껑, 이쑤시개, 종이, 젓가락, 호일, 빨대, 통뼈, 조개껍질, 중금속 오염물질, 유독성물질 등을 제거후 배출하 십시오
-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 창 군 수

연락처 : 고창군 환경시설사업소 (전화 560-○○○)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지

45cm

54.5 cm 15cm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재사용 종량제 봉투**(20ℓ)



54.5 cm



- 쓰레기 봉투는 20:00~06:00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 O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버리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합니다.
- 연락처 : 고창군 환경시설사업소(전화 560-○○○)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지

45cm

「고창군 상징물운영관리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상징물관리위원회)	제9조(상징물관리위원회)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 부위 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 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②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위 원 : <u>행정지원과장</u> , 문화관 광과장 <u>, 지역전략과장</u> , 군의원 2명, 그 밖의 상징물 등에 관전문가 2명	3 <u>자치행정과장</u> , , <u>농업진흥과장</u>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② (생 략)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u>안전행정부</u> 에서 정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③ <u>행정자치부</u>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 설치) ① ~ ⑤ (생 략)	제6조(위원회 설치)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보조사업 관련 <u>담당</u> 이 할 수 있다.	⑥
제30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군수는 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30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고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2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②(생 략)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고 부 위원장은 <u>주민생활지원과장</u> 이 된다.	<u>주민복지과장</u>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각 계정별	⑤ <u>기금업무</u>
<u>기금업무담당주사가</u> 된다.	팀장이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고창군 지역정보화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정보화위원회)	제6조(정보화위원회)
① ~ ③ (생 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4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u>정</u>	<u>정보통신</u>
<u>보통신담당</u> 이 된다.	팀장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관광위원회 구성 등)	제27조(관광위원회 구성 등)
① ~ ③ (생 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관광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4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	관광업무팀
<u>광업무담당</u> 으로 한다.	<u> 장</u>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고창군 지역경제 활성화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	제7조(간사) ①
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경제 업무담당 <u>주사로</u> 한다.	<u>팀장으로</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고창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위원회 설치)	제3조(위원회 설치)
① ~ ⑤ (생 략)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담당하기	6
위하여 간사를 두며, 문화재 관련업무	<u>담당팀</u>
<u>담당주사를</u> 간사로 한다.	<u>장을</u>

「고창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소위원회) ① ~ ⑦ (생 략)	제6조(소위원회)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소위원회별로 업무를 보조하기	8
위하여 재무과장을 간사로 <u>경리복식</u>	<u>경리팀장</u>
<u>담당</u> 을 서기로 둔다.	

「고창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납세자보호관의 설치)	제3조(납세자보호관의 설치)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는 자로	② 날
<u>납세자보호담당</u> 을 둘 수 있다.	<u>세자보호팀장</u>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납세자보호담당은 세무경력이 3	② 납세자보호팀장
년 이상인 자로서, 친절하고 사명감	
이 투철한 자를 우선 배치한다.	
제29조(위원회 구성) ① ~ ⑤ (생	제29조(위원회 구성) ①~⑤(현행과같
략)	음)
⑥ 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⑥ <u>납세</u>
<u>납세자보호담당</u> 을 간사로 임명한다.	<u> 자보호팀장</u>
제39조(세무상담 자료비치) ① (생	제39조(세무상담 자료비치) ① (현행과 같
략)	음)
② 납세자보호관은 배부받은 자료를	②
상담에 활용할 수 있도록 <u>납세자보</u>	납세자보호팀장-
<u>호담당</u> 에 대하여 교육을 매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고창군 여비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별표]
국내여비 지급표(제4조 관련)	국내여비 지급표(제4조 관련)
[표] (생 략)	[표] (현행과 같음)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비고 : 1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u>안전행정부장관</u> 이 협의	<u>행정자치부장관</u>
하여 정하는 기분에 따른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고창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 ⑤ (생 략)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	6
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u>복구지</u>	복구지원팀장-
<u>원담당</u> 이 된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고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고창군대책본부 구성 및 임무)	제4조(고창군대책본부 구성 및 임무)
① ~ ③ (생 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고창군 대책본부의	4
통제관은 <u>행정지원과장</u> 이 되며 총괄	<u>자치행정과장</u>
조정관을 보좌한다.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고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 ③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 ③
(생 략)	(현행과 같음)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농	4
업진흥과장, 축산과장, 지역전략과	<u>축산과장</u>
<u>장</u> , 농업기술센터소장, NH농협은행	
고창군지부장, 고창부안축산업협동	·.
조합장으로 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고창군 복분자선연 웰빙프라자 운영관리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원회) ① ~ ⑤ (생 략)	제7조(위원회) ① ~ ⑤ (현행과 같
	음)
⑥ 운영위원회 업무의 원만한 추진	6
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u>실무팀장</u>
<u>실무담당 주사로</u> 한다.	<u>으로</u>

「고창군 계획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1조(간사 및 서기) ① (생 략)	제71조(간사 및 서기) ① (현행과 같
	음)
② 간사는 군 직제에 따라 위원회를	2
주관하는 부서의 <u>업무담당</u> 이 되고,	<u>업무팀장</u>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고창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 ④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 ④
(생 략)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⑤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u>체육진흥</u>	<u>체육진흥팀장이</u> -
<u>담당 주사가</u> 된다.	

「고창군 생활폐기물 등 처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대형폐기물 배출신고) 대형폐	제13조(대형폐기물 배출신고)
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배	
출하기 3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u>환경보호과</u> 및 읍·면사	환경시설사업소
무소)에게 구두・서면・전화등 사	
용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신고를	
필한 후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고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창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16 년 2월 16일

고창군 조례 제 2229 호

고창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창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위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으로 한다.

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제1조(목적)「담배사업법」
<u>시행규칙」 제7조제3항</u> 단서에서 위	시행규칙 제7조제4항
임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따른	
사실조사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책임과 의무) ① (생 략)	제6조(책임과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수탁기관은 사실조사 업무에 소	<삭 제>
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	
며, 사실조사 업무에서 발생하는 일	
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	
임을 진다.	

고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창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16 년 2월 16일

고창군 조례 제 2230 호

고창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창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를 "「소 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2호"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10년으로"를 "2020년 12월 31일로"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	제1조(목적)
법」제142조 및 <u>「소기업 및 소상공</u>	제14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
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	원에 관한 법률」 제2조
<u>제2호</u> 에 따른 고창군에 사업장을 두	
고 있는 소상공인의 육성발전과 경	
영안정을 위한 지원기금(이하 "기금	
"이라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	
으로 운영·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	제2조(정의)
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및 소상	1 <u>「소상공인 보호</u>
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 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u>행령 제2조제2호</u> 에 해당하는 사업	
자를 말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7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이 기금	제17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의 존속기한은 <u>10년으로</u> 한다.	<u>2020년 12월 31일로</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고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창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16 년 2월 16일

고창군 조례 제 2231 호

고창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창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 ③ (생 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삭 제>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고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창군 지역경제 활성화 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16 년 2월 16일

고창군 조례 제 2232 호

고창군 지역경제 활성화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창군 지역경제 활성화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	
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삭 제>
2. · 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고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창군 상하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운영관리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16 년 2월 16일

고창군 조례 제 2233 호

고창군 상하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운영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의 자연, 문화, 사회자원, 지역특산품, 지역생산 제품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자연친화적인 휴식, 전시, 레저·체험공간 및 특산품, 생산제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한 상하지구 농어촌 테마공원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상하지구 농어촌테마공원(이하 "테마공원" 이라 한다)의 위치는 전라북도 고창군 상하면 왕재길 65-61 일원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 제3조(시설) ① 테마공원은 상하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목적에 맞는 체험, 홍보, 전시, 숙박, 먹거리 판매 등과 이와 유사한 시설로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목적의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② 테마공원은 민간에서 설치한 전시축사, 친환경 농산물판매장, 햄소시지공방, 바비큐레스토랑, 유기농카페, 콘도, 게르마늄욕장과 공공에서 투자하여 설치한 친환경 전시관, 과일공방, 쌀공방, 장류공방, 유제품 체험관 및 부대시설로 한다.
- 제4조(운영·관리) ① 테마공원의 민간시설은 해당시설 설치자 또는 설치자에 의해 지정된 자가 운영·관리한다.
 - ② 테마공원의 공공시설은 고창군에서 직접 운영·관리하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시설의 관리위탁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 ③ 공공시설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의 방법으로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탁자가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제5조(공공시설의 사용·수익허가 및 위탁)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공공에서 설치한 시설물을 사용·수익 허가하거나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 운영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② 공공시설을 위탁할 경우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자와 시설의 운영 및 사용 등에 필요한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③ 사용·수익허가 및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다.
 - ④ 군수는 공공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 보조할 수 있다.
 - ⑤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지역특산품 및 지역생산품의 전시·판매를 위한 공공시설은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
 - ⑥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수 탁자를 선정하여 한다. 이 경우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시설을 설 치한 자와 협의할 수 있다.
- 제6조(사용·수익허가 및 수탁 신청) ① 공공시설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 운영 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수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물품, 장비 보유현황
 - 2.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재정부담 능력
 - 3. 수탁 받으려는 시설 운영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
 - 4. 수탁시설의 운영 및 수익사업계획 등
 - 5. 그 밖에 농림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력 사항 등

- ② 수탁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 운영 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협약체결)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 탁 협약을 체결하고 공증하여야 한다.
 - 1. 수탁자의 인적사항
 - 2. 수탁시설 계약기간, 사용료, 사무 내용 및 재산상황
 - 3. 수탁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 4. 수탁자의 의무, 안전관리, 협약해지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시설 사용료 등) ①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시설에 대하여 매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산출기준, 납부방법 등은 고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② 제1항의 사용요율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되, 운영실적에 따라 달리 조정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 유지·관리비를 100분의 30 이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
 - ④ 사용시설 운영에 따른 각종 세금과 공과금, 시설 유지·관리비 등은 수탁 자가 부담한다.
- 제9조(수탁재산의 위탁료 등)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위탁한 재산에 대하여 위탁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위탁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운영기준 별표 4에 따따른다.
- 제10조(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양도 및 전대할 수 있다.
- 제11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 공공시설의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1.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공공시설을 제10조 단서에 따른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 2. 수용·수익허가를 받은 공공시설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 3. 사전 승인 없이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공공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 5. 제8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 제12조(위·수탁 협약해지)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되는 때에는 위·수탁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수탁업무 처리가 위법 · 부당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 2. 수탁조건, 협약내용을 위반하거나 지도감독을 거부하는 때
 -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탁운영이 곤란한 때
 - ② 군수는 위·수탁 시설을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협약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협약을 중도에 변경할 수 있다. 단, 협약을 중도에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수탁자와 협의하여 한다.
 - ③ 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위탁기간이 만료 또는 중도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위탁시설에 대한 점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 제13조(시설 관리 의무) ①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 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모든 규정을 준수하며, 시설물 관리 의무를 다하여 야 한다.
 - ②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 및 비품 등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4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테마공원 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사실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검사 또는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나 조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군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5조(보험가입) 군수는 테마공원 공공시설의 화재 및 이용자 안전을 고려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수액 피허가자 및 수탁자에게 부과 할 수 있다.
-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테마공원 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유재산 [] 사용허가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륵 합니다

접수번호	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성명			생년월일		
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재산	·의 표시	표시			٥٢
	소재지	지목	공부면적(m²)	신청면적 (m²)		용도
신청내용						
건정대중						
고창군 성 신청합니다.	·하지구 농어촌테마공	·원 운영관	리 조례 제63	Շ제1항에	따라 위 재	산의 사용허가를
						년 월 일
고칭	}군수 귀하	신:	청인			(서명 또는 인)
						수수료
첨부서류	없 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3 → 접수	→	검토	→ 허가	· 결정 →	허가서 교부
※ 신청재산에 초과할 수	대한 현장 확인, 측량, 감 있습니다.	정평가 등 관	계 법령에 따른 첫	절차로 실제	허가일 또는 7	계약 체결일은 20일을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처리기간			
	수탁자 지정 신청서						30일
	① 법인(단체])명					
신 청 인	② 대표자 /	성명			③ 전화번호		
1	④ 소재지						
(5) f	탁업무명		행정지	내산의 관	리.처분 및 개발에	관한 사무	-
민간		는 행기	정재산의 된		조례 제6조2항에 및 개발 사무에 된		
첨부 :	 사업계획(법인 등기 기타 증빙 	부등본					
			년	월	일		
				신 청	기 관 :		
				대표자	성명 :	(9	인)
고 7	y군수 귀하						

고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16 년 2월 16일

고창군 조례 제 2234 호

고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제13조 및 제14조로하고, 제10조부터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 ① 군수는 군 지역에 있는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이경우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취득한 사람에게만 지급한다.

- ②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1. 멧돼지 : 100,000원(마리당)
- 2. 고라니: 50,000원(마리당)
- 3. 까 치: 5,000원(마리당)

제11조(포획신고) 제10조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 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

- 제12조(포획보상금 지급) ① 군수는 유해야생동물 포획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실제 포획한 사실을 확인하여 보상금을 결정하고 지급한다.
 - ② 신고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포획보상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즉시 환수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4호서식】

유해야생동물 포획 신고서

- · 포획동물명 :
- · 수 량:
- · 포획 일시 및 장소:

「고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을 위와 같이 포획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붙임: 증거사진 1부

년 월 일

· 신고자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계좌번호 :

· 확인자 : 소속 읍면사무소 직급 성명 (인)

고창군수 귀하

*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포획한 야생동물은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0조(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 ① 군
	수는 군 지역에 있는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을 포획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취득한 사람에게만 지급한다.
	②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멧돼지 : 100,000원(마리당)
	2. 고라니 : 50,000원(마리당)
	3. 까 치 : 5,000원(마리당)
<u><신 설></u>	제11조(포획신고) 제10조에 따른 유해
	야생동물 포획보상을 희망하는 사람
	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유해야생
	동물 포획 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u><신 설></u>	제12조(포획보상금 지급) ① 군수는
	유해야생동물 포획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실제 포획한 사실을 확인하
	여 보상금을 결정하고 지급한다.
	② 신고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포획보상금을 받은 것이 확인
	되었을 때에는 이를 즉시 환수한다.
<u>제10조</u> (생 략)	<u>제13조</u> (현행 제10조와 같음)
제11조 (생 략)	<u>제14조</u> (현행 제11조와 같음)

고창군 조직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16년 2월 16 일

고창군 규칙 제 1081 호

고창군 조직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 규칙

제1조(「고창군 관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 고 창군 관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제2조(「고창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 고창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고창군 법무행정사무처리 규칙」의 개정) 고창군 법무행정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주무담당"을 "주무팀장"으로 한다.

제4조(「고창군 주요업무자체평가 규칙」의 개정) 고창군 주요업무자체평가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2와 같이 한다.

제5조(「고창군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의 개정) 고창군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행정지원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을 별지 3과 같이 한다.

제6조(「고창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고창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행정지원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제11조 중 "행정지원과"를 "자치행정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자료관리담당자(이하 "자료관리담당"이라 한다)를 "자료관리담당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자료관리담담에"를 "자료관리담당자에게"로, "자료관리담당은"을 "자료관리담당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자료관리담당이"를 "자료관리담당자가"로 한다.

제14조 중 "행정지원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제7조(「고창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의 개정) 고창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단서 중 "담당단위"를 "팀단위"로 한다.

제8조(「고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고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담당주사가"를 "담당팀장이"로 한다.

제9조(「고창군 공용차량관리 규칙」의 개정) 고창군 공용차량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별지 4 및 별지 5와 같이 한다.

제10조(「고창군 군세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의 개정) 고창군 군세기 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담당별"을 "팀별"로 한다.

제11조(「고창군 군세부과징수 규칙」의 개정) 고창군 군세부과징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을 각각 별지 6부터 별지 27까지와 같이 한다.

제12조(「고창군 재무회계 규칙」의 개정) 고창군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파목, 같은 항 제3호차목 및 같은 항 제4호마목 중 "서무업무담당"을 각각 "서무업무팀장"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주무담당"을 "주무팀장"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1-1호서식, 별지 제21-2호서식, 별지 제21-3호서식, 별지 제21-4호서식, 별지 제21-5호서식, 별지 제21-6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29-1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6-1호서식, 별지 제37-1호서식, 별지 제45호서식, 별지 제46호서식, 별지 제47호서식, 별지 제48호서식, 별지 제50호서식, 별지 제50-1호서식. 별지 제50-2호서식, 별지 제50-3호서식, 별지 제63호서식을 각각 별지 28부터 별지 50까지와 같이 한다.

제13조(「고창군의회 사무과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의 개정) 고창군의회 사무과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8호 중 "담당"을 "팀"으로 한다.

제14조(「고창군 농업기계순회 수리봉사반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고창군 농업기계순회 수리봉사반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 51 및 별지 52와 같이 한다.

제15조(「고창군 새농민양성소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고창군 새농민양성소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농기계담당"을 "농기계팀장"으로 한다.

제16조(「고창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의 개정) 고창군 농업산학협동 심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사회개발팀장"을 "지도행정팀장"으로 한다.

제17조(「고창군 자연경관보전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고창군 자연경관보 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제18조(「고창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고창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제5항 중 "체육업무담당주사가"를 "체육업무팀장이"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 53와 같이 한다.

제19조(「고창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의 개정) 고창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청소년업무담당"을 "청소년업무팀장"으로 한다.

제20조(「고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 규칙」의 개정) 고창군 지방 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경리업무담당"을 "경리업무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세입업무담당"을 "세입업무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자산업무담당"을 "자산업무팀장"으로 한다.

제105조 중 "행정안전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113조 본문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별지 제38호서식, 별지 제40호서식, 별지 제40호의2서식, 별지 제40호의3서식, 별지 제40호의4서식, 별지 제45호서식을 각각 별지 54부터 별지 61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시행 후 2016년 2월 29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지 1]

■ 고창군 관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관용심사위원회 심사의결 결과보고서

소속	직위(직급)	성 명	처 분 사 유	처분예정 양 정	양 정

년 월 일

고창군관용심사위원회	기위원장		부 군 수	@
	부위원장		기획예산실장	1
	위	원	자치행정과장	@
	위	원	재 무 과 장	@
	위	원	건설도시과장	@
	간	사	감사 팀장	(1)

고 창 군 수 귀하

[별지 2]

■ 고창군 주요업무자체평가 규칙 [별지 제3호서식] 실·과별 조치계획 작성서식(실·과·소 ⇨ 기획예산실)

실 · 과별 조치계획(제7조 관련)

□ 작성대상 ○ 자체평가 결과 노력, 부진의 종합평가를 받은 시책이나 사업의 경우

□ 작성양식

지 적 사 항	조 치 계 획
1.	1.
2.	2.
3.	3.

【작성방법】

○ 개선사항 : 자체평가결과 개선사항을 기재

○ 조치계획 : 개선사항별로 조치계획을 작성(※ 추진일정 반드시 기재)

巾

[별지 3]

■ 고창군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별지 제2-1호서식]

K
K
<u>On</u>
마
ЦJ
KL
心口

(일.숙 직)

유일

<u>2</u>11

邻

200 년

石山	ᄺ

	순찰자	6	6	6				±0	이 메	<u>\</u>				상유무)	
기순찰 및 점 검 사 향								처 리 사 항	송	전 라				연락사항(이상유무)	
청사내외	발 견	百	부터	부터	부터	垣	百	문 서	宣	번호 수신처				송화자성명	
	순찰시간	시 분부터	시 분부	시 분부	시 분부	시 분부터	시 분부터		전 마	문서번호				수화자성명	
요 사용										i ii	· ·	서	古	수화자 소속.직명	
속 지명 성						서	īĸ	<u> </u>	<u></u> √ √ √	-	. i	사 2. 분석	3.	연락기관	
다 당적근무 소	10	잗	酉.	بر ا	် တို	ع]	₹ ∄	마이	구수 속	퍼	正	ヤ	· 아	연락시간	

제542호

중 요 보 고 사 향																기 타 특 이 사 항																
7 목	신고		시 분	시 분	시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시	시 분	시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_
型 つ つ	ΚL															rs '정																
î	기 관 명	고 창 읍	고 수 면	아 산 면	무 상 면	유	상 하 면	해 리 면	성송면	대 산 면	심 원 면	· 한 교	성내면	신 림 면	는 유 유	보건	농업기술센터	환경시설사업소	체육청소년사업소	선운산도립공원사무소	고창읍성관리사무소	창 배	배 수	산 배	무장배수지		산배수	뎍 배 수	동리국악당	내체육		

[별지 4]

■ 고창군 공용차량관리 규칙 [별지 제9호서식]

차 량 운 행 허 가 신 청 서

				담당자	재산관리팀장	재무과장	결재 일자
실 과 명		차	종		차량번호		
사용자							
용							
행 선 지	출 발					도 첫	
· 중선시							
사용시간	어린 어린	일 일		부터 까지	일 시간		

위와 같이 차량운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실과소장 (인)

재 무 과 장 귀하

담당자	팀	장	과	장	부군수	군	수	결
								재

차 량 운 행 승 인

담 당 자	재산관리팀장	재무과장	
			결 재

년 월 일(요일)

인	岂	三(五三/					
구 분			<mark>오</mark>	행	상	항		
차량별	운전원	사 용 부 서	사 용	자	사 용 시 간	행선지	<u> </u>	무

[별지 5]

■ 고창군 공용차량관리 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전면>

차 량 운 행 일 지

										τ	담당자			당 장	_ 결	
															재	
차 량 번 호		호	안	전일	[누계			km	유류		전일	 안량			L	_
			· 행 상	금일	[누계			km	수		급유				L	
운전원		인	황	누	계			km	현		소 ^비 잔	l 당 량			I.	
승차자	<u> </u>		무		경유/	지 및	목적지		<u>출</u>	시 시 발				<u> 형</u> 행	운 행 확 인	
																_

<후면>

차 량 일 일 점 검 표

점검자

(인)

점 검 내 용	상	태	비	고
1) 운행전 점검개소 ①엔진오일은 정상인가 ②냉각수 보충상태는 ③에어크리너는 ④조정계통 작동은(계기포함) ⑤타이어 공기압 및 트레이드 마모상태는 ⑥브레이크 및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⑦각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⑧운행에 필요한 연료 및 조향장치 작동은				
2) 운행중 점검개소 ①엔진 및 차체의 잡읍은 없는가 ②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작동상태				
3) 운행후 점검개소 ①타이어 공기압 및 마모상태는 ②각부 누설개소는 없는가 ③케이블 및 벨트상태는 ④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⑤정비 및 청소공구는 ⑥자동차문은 잘 잠겨졌는가 ⑦열쇠보관은				
기타 기재 사항				
범례 : V 양호 △ 요수리 X 요교환				

[6] [1]

■ 고창군 군세부과징수 규칙 [별지 제1호서식]

담배소비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

₹0 (○○음면) 돈 넊 $\overline{\Pi} \overline{\Pi}$ 담당자 己 등 년 한 존 伽 ₹ 10位 ⟨⊢ 맘배의 구분 주민(법인)등록번호 \forall Κ 전화번호 성명·법인명 w 내 신고일자 <u>피</u> 머 설 사 씨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巾

[별지 7]

■ 고창군 군세부과정수 규칙 [별지 제2호서식]

			담배소비세 과세자료 처리부	·· ▼	과세지	문 문	파					
00년도	(라) 곰룡() 그러()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읍면)
과세	(FH) FE FY	к⊢	I 7	ń <	0		-	7	- - - - -		결재	
- I I	05 05 05 05 05 05	전화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	바 구 등	jo :⊢	<u>본</u>	(학생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u> </u>	₹	2 <u>0</u> 2 <u>1</u> 2 <u>0</u>	담당자	四 六0	과 장
※ 전산차	리하는 경우에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연 수 등 등						364m	x257m	364mm×257mm(일반용지 80g/㎡)	(80g/m²)

[별지 8]

■ 고창군 군세부과징수 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주민세(균등분)	비과세 처	리부			
OO2	년도 ○○월	분					(00)읍면)
일련	성 명		주 소	비과세·감면			결 재	
번호	(법인명)	전화번호	주민(법인) 등록번호	사 유	세 액	담당자	팀장	과장

210mm × 297mm(일반용지 80g/m²)

巾

[별지 9]

■ 고창군 군세부과징수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읍면)	결 재	타장					06/mm/0141911 000/11/20
			담당자					1
파			판					
납부 처리부			<u>추</u> 애					
ōK			되 전					
재산분) 신고		상	- 서 1 분 1 도					
주민세(재			K ⊢ ≺⊦					
K		납세의무자	주민(법인) 등록번호					
		_	성명 (법인명)					
	○○연도 ○○월분		수 연 수 선 원					
	300	사 사	- 庆					

巾

[별지 10]

■ 고창군 군세부과징수 규칙 [별지 제5호서식]

초리무 <u>차</u>0 자 iK 수정신고 (○○흥日)

	☆ 0									m²)
품	市									80g/ı
	르 호									머
KII	담당자									364mm×257mm(미색모조 80g/㎡)
040	사									n×257n
3-결정 내용	납부세액									364mr
수정신고 및 경정·결정 내용	과세표준									
수정신	세목									
	일자									
ශ0	납부세액									
신고내	과세표준									
다 도	세목									
	일자									등
F F	방건의 수색시									≺ ⊢
7 1 0	배 <u>기</u>									사용실
0 =	<u></u> 부세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법인)등록번호	ᡧ									전산으로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Κ 		-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에 제		<u> </u>							※ 전산

- 78 -

[별지 11]

■ 고창군 군세부과징수 규칙 [별지 제6호서식]

				수미세	민세(재산·	(남)	세자료	(재산분) 과세자료처리부						
Ŏ	○○연도 ○○월분	를 기										O	(의흥이이)	
과제			다 씨 의 무	구 자	수 장								교	
- - - - - -	사 업 어 교	성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K ⊢ ≺-ł	- 서 교 전 교 고	<u>即</u> 첫	<u>짜</u>	산출세액	가산세	판	<u>이</u> 이	마아가	回 Ķ0	년 수
※ 전산처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에는 전산으	그로 생산된 다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수 있 마.					297mm ×	× 210mr	m(일반용	210mm(일반용지 80g/㎡]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별지 12]

■ 고창군 군세부과징수 규칙 [별지 제8호서식]

	(○○읍면)	퐌	년 상								80g/m,)
	\bigcirc	<u> </u>	回 목0								일반용지
		.,	담당자								257mm(⁹
											364mm×257mm(일반용지 80g/㎡)
납부 처리부											
		0	¶ ₹								
신고 및		비	₹ r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신고		K⊢ ⟨┤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용할 수 있음.
지방소들			전화번호								생산된 대장을 사용
		HOH)HY	00 07 00 00 00 00 00			1			ı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연도 ○○월분	10 17	7 1 7								하는 경우0
	O 으 연 도	マ マ マ マ	거 건 기								※ 전산처리

巾

[별지 13]

■ 고창군 군세부과징수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일련번호

지방소득세(소득세분) 특별징수의무자 대장

		찬선																
	결재	回 ⁵ 0																
		마양자																
		파슈																
		등 전 전																
	πLi	합																
<u></u>	보통징수분	가산세																
기관명(사업장명)	버	사 바 음																
기관명(바 대 대																
.,		서 화 수의																
		KIO ZII																
	기타(배당)소득	사 유 																
	기타(1	다 대 내																
		이																
		KIO 公																
	이자소득	지 수 등																
	0	원 표주																
		증감 인원																
	네	사 는 사 는 사 는 사 는 사 는 사 는 사 는 사 는 사 는 사 는																
K -	다 라 라	바 씨 사 기																
의무자		징																
특별징수의무자 주소	ات 1	IU - 大																
ШIГ		<u>에</u> 표미	<u>등</u>	<u>에</u>	28	いが	4월	જ	룡9	5등/	8 8 8	8 8 8	10월	<u>해</u>	12월	아 양 양	71EF	F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별지 14]

■ 고창군 군세부과징수 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지방소를	지방소득세(법인세분) 과세자료 처리부	세분) 과 사	를 가 를 하고 로	차리부					
O 이 영	○○연도 ○○월분(남기	월분(남기	월 일부터	애	일까지)							(○○음면)	등 의
과세	설교 (누	- - -	Κ <u></u>	서	= - - - -	亭	() =	Ę	= - - - 1	ī	1710	결재	
지 에	일자	편 건 전	전화번호	에 대 에 대	표 진 전	세무서	<u>柜</u>	ካ <u>ዶ</u>		₹	마당자	回 Ķ0	선선
		_											
※ 전산차	전산처리하는 경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0				297	297mm × 210r	210mm(일반용지 80g/㎡)	용지 80g	3/ m³)

巾

[별지 15]

■ 고창군 군세부과징수 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과세자료 처리부	날기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읍면)	사 사 나 바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명 소흑세 소득세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 전사이로 생사되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을
K		K	전화번호				생수된
	○○연도 ○○월분(납기	:	일자 성 B				는 고우에는 저사이르
	() () () ()	과세					※ 저사코리라다

[별지 16]

■ 고창군 군세부과징수 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선산저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016.3.11.(금)

巾

[별지 17]

■ 고창군 군세부과징수 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과장					
		결재	티아					
			담당자					
πL			세애					
납부 처리부			씨율					
ᅜ			급여총액					
원분) 신			왕 교 위 十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사					
바		무 자	(]					
		납세의무	주민(법인) 등록번호					
			성 명 (법인명)					
	○○연도 ○○월분		사업소명					
	Ö	사 사	일자					

364mm×257mm(일반용지 80g/m²)

巾

[별지 18]

■ 고창군 군세부과징수 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

사업소명 성명 주민(법인) 2 (법인명) 등록번호 1 (법인명) 1 (법인명) 1 (법인명) 1 (법인명) 2 (법인명) 1 (법인명) 2	나다에 되었다. 사실시티 소디나								
등 전 전 연 전 연 연 연 연 연 연 연 연 연 연 연 연 연 연 연	ij F		KH 식						

巾

2016.3.11.(금)

[별지 19]

■ 고창군 군세부과징수 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설교 사-i어	어 어 전 시 원 이 전 에 어 전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89 사 수 명(법인명) 교(법인원) 이 의 기계	수0 <u>소기</u> 관기 네어 <u>역</u> 에어	고 사 도 식	古琳	조(h) 전 전 건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대산세 비과세 차리부 지역자원 시설세 (특정부동산) 계 3차 확인내용 5차 계 3차 확인내용 6차	부	과 세 자 후인내용 3차 후인내용 3차 후인내용	H 연 연 연 구 인 이 이 에	리 35 8차	# 연내용 10차 등이내용 12차 등이 12차 들이 12	· 10本 11本 12本	리 내 용 7차 확인내용 10차 확인내용 8차 확인내용 11차 확인내용 9차 확인내용 12차 확인내용	이피 <u> </u>	- ロ - ロ 	<u>부</u> 校0
·																		
'																		
	-	:																

※전산차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97mm \times 210mm(일반용지 $80g/m^{\circ}$)

[별지 20]

■ 고창군 군세부과징수 규칙 [별지 제22호서식]

담당자 팀장 과장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

m, 등 (물답일) (단위 : 원, 물납 허가내역 부동산등기 서류제출일 통지일 물납부동산 평가가액 건물 <u>메</u> 찬 퍼 물납 신청내역 소재지 岭 신청세액 유 교 등 물건지 과세표준 부과세액 재산세부과내역 포 과 대 아 바매 납세의무자 (신청인) 내역 주소지 소 80 유 일 일 일 생

선택 기재), 당초 납부세액(일부납부 세액 기재) ΚЮ 퍼 ※ 작성요령 : 과세대상(건축물, 주택,

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21]

■ 고창군 군세부과징수 규칙 [별지 제23호서식]

라 아 III 상 담당자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

(단위 : 원)

			1		1	1		٦
स	분답기한							
분납 신청내역	분답세액							
	납기내 세액							
	부과세액							
	과세표준							
재산세부과내역	물건지							
재.	과세번호							
	과세대상							
	싸							
남세의무자 (신청인) 내역	주민등록번호 주수지	-						
	소 명							
스 첫	면 89 9							

※ 작성요령 : 과세대상(건축물, 주택, 토지 중 선택 기재), 당초 납부세액(일부납부 세액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80g/㎡)

2016.3.11.(昌)

[별지 22]

■ 고창군 군세부과징수 규칙 [별지 제24호서식]

부 상 III 상 담당자

납세관리인 관리대장

(900 是)

心	차리자						
직권지정 사항							
Ķſ	동기일						
신고사항	신고사유						
다	신고일						
	K⊢ ≺ 1						
납세관리인	주민(법인) 등록번호						
	성명 (법인명)						
	삮						
납세의무자	주민(법인) 등록번호						
	성명 (법인명)						
다. 다.	바건 사소스						
 E S	2) 민						

210mm×297mm(일반용지 80g/㎡)

巾

[별지 23]

■ 고창군 군세부과징수 규칙 [별지 제26호서식]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

													\ -
설 (누	Г	(FU O FH) FU FY	Κ 	쉭	ψ 	10 H	째 1	제1기본	제2	제2기분	Vin	결 재	
H H	기 기	8명(립건명)	전화번호	주민(법인) 등록번호	사증사면요	हा इन इन	두 다 생	파	다 서 역	다	담당자	티수	과 장
※전산처리를	그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0 ≅≼					364mm×	364mm×257mm(일반용지 80g/㎡	일반용지 8	0g/m³)

巾

[별지 24]

■ 고창군 군세부과징수 규칙 [별지 제27호서식]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

00년도 00월분

(근・\ ○○)

		<u> </u>								\neg
-		년 상								
	결재	旧자								
		담당자								
	- - -	그 마 -								
] - -	다ー세대								
	10%	안								
	= 0 - -	면세대								
	i I L	사동자번호								
	ধ	주민(법인) 등록번호								
	Κ 	전화번호								
		<u> </u>								
		성명(법인명)								
	- (-	신니일								
1	<u>석</u> 1	씨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巾

[별지 25]

■ 고창군 군세부과징수 규칙 [별지 제28호서식]

자동차세(소유) 비과세 처리부

ſ	1									ı
(○○읍면)		년 전								
0	결 재	<u>미</u> 수0								
	l via	담당자								
	비과세	세애								
	비과세	사유								
	신고(직권)	비과세								
	X.E.Y.H.S	거								
	ধ	주민(법인)등록번호								
	Κ <u></u>	전화번호								
ᆔ	서명(Hol묩)	0.0 0.0 II CO		I						
OO년도 OO월분	 - -									
00 <u>4</u> 5	四十	는 다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 93 -

364mm×257mm(일반용지 80g/m²)

2016.3.11.(昌)

 \mathbb{H}

巾

[별지 26]

■ 고창군 군세부과징수 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자동차세(주행)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미대)

이이웰타 00년도

<u>⊀</u>0 넊 폭 回 以 凹 타 당 자 상 교 수행 소대 등 주행세 신고일 주행<u>세</u> 신 기 등 년 한 사 <u>취</u> 사 황 ᄡ 유류 붜 ₹ 卢 ₹ 연락처 대표자 $\dot{\forall}$ 상호 <u>사업자등록번호</u>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마 0 ₹ 사 <u>红</u> 仆 지 (대

증 등 ⊹ 心口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전산처리를 하는

364mm×257mm(일반용지 80g/㎡)

- 94 -

巾

[별지 27]

■ 고창군 군세부과징수 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읍면)		과장							
	0	결재	品							
			담당자							
		=	₹							
		=	가산세							
파교		=	메 <u>추</u>							
I자료 차		(<u>村</u>							
행) 과사		師	세무서							
자동차세(주행) 과세자료 처리부	일까지)	교통·에너지·	환경세액							학 사 일 일
☆	월 일부터 월 일	사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저사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저사으로 생사되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을
	○○년도 ○○월분(남기		ź0 료0 <u>垳</u>							하는 경우에는
) 그러이(과세	떠							※저사처리를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별지 28]

■ 고창군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징 수 결 의 서

주관

										1 12
징수	-관		발	의			년	웓	일	인
과	장		고지	서발행			년	월	일	인
팀	장		납	입 기한			년	월	일	인
담당	가		징수	-부기재			년	월	일	인
	년	회계			,	결 정	세	액		
	관		본	세	가	산 금		이자	합	계
세입	항									
과목	목									
	세목									
		급		원	(금			원)		
납 부주소	- 자 성명									
적	क									

[별지 29]

■ 고창군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21-1호서식]

결 손 결 의 서

주관

징수	수관		肩	<u>}</u>	4		년	월	일	인
과	장		J	고서발	H		년	월	일	인
팀	장		닙	1 입 기학	<u>1</u>		년	월	일	인
담당	당자		る]수부기기	4		년	월	일	인
	년	회계			·	결 정	세	액		
	관		1	본 세	7	가 산 금		이자	합	계
세입	항									
과목	목									
	세목	,								
			급		원(금	<u>.</u>		원)		
납 부주소	- 자 성명									
적	ይ									

[별지 30]

■ 고창군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21-2호서식]

결 손 처 분 표

			결	재				ગામો ગામો	20 Z 9] () =1]() テ	י נם	С нì	-1) 00 그 VJ 0
담당지	-	팀 7	상	과	장	징수관			30소의 <i>4</i> 항에 의거					제30조의3 니다
									200 : 직	년	9			(인)
체납기	자		주2					(신	J 연 월 9)] /				
과세번			Ö	o				(' c	세액	已/				
- 19	ki	도	ブ	분	납기	세	목	본세	가산금		계		과	세물건
							7) 						
						<u> </u>	全/	사결과		Τ			조사자	
	구 퉌	_				내 용			조사일자	소	소	 직급		성명
거	주조	:사									1	, ,		0 0
재	산조	:사												
허가시	· 항 및	! 기타	7											
						확'	인	및 조사						
			ア	주사/	실 확인						조	사사	항	
읍면동	·장	팀	7	S}-	담	당자		통리장	조회요	지				
									회신요	지				

[※] 지방세 결손처분표로 사용

[별지 31]

■ 고창군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21-3호서식]

결 손 처 분 표

rlrl-l	Τ:	결 1 기	재	ו בן	カム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 2항, 지방세법 30조의징수관2 제3호 및 동법 제30조의3 제1항에 의거							
담당자	Ę	심 장	무/	너장	성수원	<u>†</u>	2 제3호		농법 제3 손처분코			세 의거	
									ㄴ∧止죠 30 년				
							조사자 :			성명		(인)	
체납지	l.	2	주소			•							
세 됩 ^	Γ)	성명					(싱	성 연 월	일)			
회계		부과		'	최	초			결?	정세액			
년도		' ' 번호		세목		고 기일	본세		가산금		자	합계	
<u> </u>		민쏘			日	一旦			부.	과물건			
						-	 ŀ결과						
7	н				- 1) Ó		161		. 1) (c) =)		조사지	<u> </u>	
	분				내 용			্র	소사일자	소속	직급	성명	
거주	거주조사												
재산	재산조사												
허가사형	맛	기타											
					획	인	및 조사						
			거주사	실 확	인		조사사항			-항			
읍면동	장	팀	장	Ę	남당자		통리장	3	스회요지				
	_							ই]신요지				

[※] 세외수입 결손처분표로 사용

[별지 32]

■ 고창군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21-4호서식]

결손처분 취소결의서

주관

		T				1				
징스	수관			발	의		년	월	일	인
부시	서장		7	징수부 무	등재		년	월	일	인
팀	장				년손)결정, 발 부		년	월	일	인
담당	당자		L 1	मे	7]		년 년	월	일 부터 일 까지	
	년	회계			결	정	세 액			
	관		본	세	가 산	금	०]	자	합	계
세입	항									
과목	목									
	세목									
		급		원	(금			원)	_	
납부주소										
적	Ö									

[※] 세외수입 결손처분 취소결의서로 사용

[별지 33]

■ 고창군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21-5호서식]

과오납 충당결의서

9 <u>1</u>		(인) (인)
Ģ		
	월 일	(인)
Ó		
	일 일	(인)
9	월 일	(인)
	원)	
납일자	과오닙	'자
납총액	성명/즉	스소
ミロー	납세의-	무자
5 3 9	성명/즉	스소
부정리		(인)
	납일자 납총액	월 일 원) 납일자 과오납 납총액 성명/주

[※] 지방세 과오납 충당결의서로 사용

[별지 34]

■ 고창군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21-6호서식]

과오납 충당결의서

주관

	징수관			발	의		년	월	일	인
	부서장			징 수 부 등	재		년	월	일	인
	팀 장			과오납금정리부	등재		년	월	일	인
	담당자			충당통지서 :	발부		년	월	일	인
		·당금액	: 금		원(금	_		٩	원)	
	세입	과목	회계					과	 오납자	
	관	항	연도	과오납 총액	과	·오납	성명	<u>'</u>	- н т	
과		국 ㅁ	부과		년	월일	주소			
오	71	목	번호				1 3			
납										
액										
	과오납힙	계(1)		충당 후	 잔액(1	.)-(2)				
	세입	과목	회계					П	미납자	
	관	항 	연도	미납총액	츳	·당액	부서			
충		국 	부과	1 1 0 1	0	0 1	성명			
당	শ্ৰ	목	번호				주소			
내										
역										
	충당액총	·액(2)		충당후미수	 -납액	(미납총	액 - 종	충당인	백 총액)	
적										
요							수 	납부기	정리	인
							1			

[※] 세외수입 과오납 충당결의서로 사용

[별지 35]

■ 고창군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수입일계표

자치단체명:

사시단제명 : 세입일자 : 200 . . .

결	담당자	팀장	부서장	징수관
재				

			. 11			
세 목	현	년 도	과	년 도	세	입 합 계 금액
(세목코드/세목명)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일 계						

[※] 지방세 수입일계표로 사용

巾

[별지 36]

■ 고창군 재무희계 규칙 [별지 제29-1호서식]

수입일계표

立口	자 팀장 과장 징수관	
	담당자	

영수필통지서건수	中心	
영수필통	かず	
	순수남	
액 (원)	세입경정	
다	후	
	イド	
	세국	
머	머	
ন	কৃ	
	큐	

※ 세외수입 수입일계표로 사용

[별지 37]

■ 고창군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30호서식]

반 납 결 의 서

증제	ই												
팀 장	재무과장	재 무	관		년도 회계	<u>:</u>]		취	급	자	ス	출	원
				,	세 출 과	목							
			조	직			발		의				인
발 의		인	정	책								•	
			단	위			지 기	출	부 재				인
이시케이버			세	부			<u> </u>		<u>새</u>			•	
원인행위부기 재		인	편성	목			지	급 명 행부기	전 전 7				인
			통계	목			발	앵구기	샊				
	<u>금</u>			원(급	1			원	_)_				
지출일자				인	고지	서발형	9		•		•		인
지급명령 번 호	제	ই		인	납기	부기한				•	•		인
반납고지서 번 호	제	ই		인	나비	부 일			,	•	•		인
반 납 자	주소			성명		인							
주 무 과	반납사-	î :											
취급자 인													

巾

[별지 38]

■ 고창군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34호서식]

否 电空晶 Цп ζп 어 害分斗

과오납금반환명령 전 전 전 전

과오납금반홛통지

πþ

જ

型水

A

· 라 수

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

	OS수관 주관				세목코드 부과번호				그은 바화하시기			설 인 기			(의 왕 (학		귀하
7,	阿阿河	개 상 명	수 등록면	古古	회계년도 ^	K H	か - ロ	지급규과	う す o で	中中	1 -	과	,	다 지 역	장수관 고		디
	관 주관				मैग्मिक	Ž,	ј о		中。	o 1	令		<u> </u>	정수관		머	
	00%수관				세목코드	[~[~	<u>- </u>		ত ক		<u>솔</u>		如如	四分		ਨੂੰ	
ָב, בי	宮油	채 성 명	자 등록번호	上上	회계년도	20日	か - ロ	지급규명	7	ָ	Z'n		Z	담당자		뀬	

ַ <u></u> יַ	회계 ○○징수관 주관	과	건 자 등록변호	古古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하보고 이기 초다	<u> </u>	지갑고대	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반환 하였기 통지함.	년 용 키	T.무		
	Ι				IIOI				<u></u>			<u> </u>	
	子丹				부과번호	N Z	0		위 금액을 본명령서 지참인 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2 _{II}		(a)	
	경수관				-	, ,	1	-	소 름.	<u>An</u>		下 下	
	7				세목코드	7/2/0				Opr		`	
	0				짜				에 찬 찬	37		KL	
ᅵᅵ	1 7	否	104	l .	I . I			1	AL UI		TΤΟ		
ָּע בי	1 2 2	₹°	등록변호	머	회계년도	청보고	口	지급금액	11 T		단체명	3 수관	

귀하

징수관

귀하

건무

[별지 39]

■ 고창군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35호서식]

귀하 근기

πþ

જ

ON 가구 주관

호교

呼

₹0

平

권 주면목관

K

송금과오남금반환통지

否

呼

单

中

Цп

Дп

어

A

Цп

令

송금과오남금반환필보고서

Z)	域と	채 성 명	권 주만독한 자	古古	회계년도	수무구	지급금액	유 유 나	8 1 1 사	계좌번호	위 금액을 치 통지함.	파	
	OS수관 주관				부과번호	今 な					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시기 바람.		<u></u>
너	\bigcirc				세목코드	이자					채권자에게 송	유 등	평 주
건	회계	채 성명	권 주만독편호 자	古七	회계년도	호부그	지급금액	은 영명	8 1 나 사	계좌번호	의 대역을		3수관 식

부과번호

세목코드

회계년도

머ㄷ

古

令 分

<u>수</u>

환부대

		과	
	কি	<u>A</u>	수관 주관
	최 성 명		
	권 주만독환 자		
	古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후부가	이자	そ な
	지급구매		
	ee 이라 나		
	8 니ㅁ 사		
	계좌번호		
\overline{L}	수 기사	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승금 반환하였기
	동지함.		
		中国	일
			(A)

구하

징수관

귀하

건건

징수관

即分

日はみ

<u>2</u>11

参加

卫

지급규명

버드

岭

中

[별지 40]

■ 고창군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36-1호서식]

과오납금정리부

금담당자팀장과장징수관재

								۱П					
43.23	부과정보 (과세번호)			과오납	내역		•		통지일	과	성명	지급계조) 바회
연번	과오납사유	과오 납일	반환 금액	과오납 본세	과오납 가산금	환부 이자	충당 금액		환부일 지급일	과오납자	주민 번호	수령인	1 반환 방법

[※] 세외수입 과오납금 정리부로 사용

H

巾

[별지 41]

■ 고창군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37-1호서식]

及个보고서

 결
 담당자
 팀 장
 과장
 징수관

 제

는 한 한

미수남의	본월까지 누계	
	바 아 라	
불납결손액	본월까지	
	다 해 러	
과오남결정액	性 智 办 지	
보 어	부 예 는	
사 구=ⓒ 알	본월까지 나계	
√ ⊢	부 예 는	
징수결정액 ○	世 智	
以 个	원 라 나	
	产	
머디	러디	
i a	100	
J	中	

() 귀하

등 ○○ ○

쮄

卫

고창군 징수관

※ 세외수입 징수보고서로 사용

[별지 42]

■ 고창군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45호서식]

(일반)지 출 결 의 서

증	레	호									
팀	장	재무과장	재년	무관		년도 회계	취급	급자		지출	<u> </u>
					세 칅	출 과 목					
발	의		•	인	조 직 정 책		발	의	•		인
원인 ⁶ 기	행위부 재 재			인	· 전 단 위		지출	쿠기재			인
계	약		•	인	세 부 편성목			명 령 쿠기재			인
검	수		•	인	통계목		지 급 번	명 령 호	제) O
		글			ģ	년(금		원	<u> </u>		
적	요					거래은행 계좌번호					
채ㅋ	권자	주 소 상 호 성 명			ଚ୍ଚ						
ਲੂ	수	위	금인]을 ⁰	· 경수함.		년 성명	월	일	Ç	2]
취급	관과 급자 인										

〈작성요령〉 (앞면)

일상경비 출납원이 일상경비를 지급할 때 사용할 결의서는 본 서식을 개서 사용

		지	출	명	세		
급	액		적			요	

(뒷면)

[별지 43]

■ 고창군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46호서식]

(인건비) 지출결의 서

증;	제 호	<u> </u>											
팀	장	재무과장	재	무관				년도 회계		급자		지출원	<u> </u>
					서] 출	- 과	목					
발	의			인		직 책			발	의	•		인
	행위부			<u>인</u>		위				부기재			인
7]	재		•	인	세 편성	부 목				급명 령 부기재			인
				인	통계				지 i 번	급명령 호	제		호
	겨	1	=	<u>L</u>				원 (금	1. 1			원)	
_ 소		득 세		L				원 (글	1.			원)	<u>)</u>
	방 _	<u> </u>		<u>L</u>				원 (글	1			원))
] '	여 금		L				원 (금	1			원)	<u>)</u>
	료보	험기금	. =	L I				원 (금	1			원)	<u>)</u>
		타		<u>L</u>				원 (금	1			원))
<u></u> हे] 금 ;	지 급 액		L				원 (금	1			원)	<u>)</u>
적		()	봉 위	급대장 임 장	I I	대조필 대조필	(<u>0</u>)			
채권	면자	위 금액을). 수t	보 <u>하</u>									
영	수		± 15	о п.				년 성 명	월 (일 인			
주관 취급 0	감자												/ol-111)

(앞면)

년 월분 봉급명세서

						0	네 액					
번호	성 명	급호봉	봉급액	솓	지방 소득 세	깄	의료	기	 계	수 령 인	인	비고
				솔세	소득	기영금	기금	타	<i>1</i> 41 			
	•		•									

(뒷면)

[별지 44]

■ 고창군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47호서식]

(여비)지출결의서

증	제	호										
팀	장	재	무과장	Z	내무관		년도 회계		급자		지출원	린
						세출과	목					
발	의	•		인	조 직			발	의	•		인
원인행 - 기				인	정 책							41
7]	재				단 위			지출투	라기재 	•	•	인
					세 부			지급		•		인
					편성목			발행투	^구 기재			
					통계목			지 급 번	명 령 호	제		호
개산급 대한 ²		개산'	액		₩	년 월 일		정 산	액 ₩			
		<u> </u>	급 -			원(금			원)_		
적 ડ	3_						거래 계좌	은행 번호				
~ -1 -		그무ᄎ			실(국))	과(1	팀)				
출장기		시 급 성 명										
			위	금액-	을 영수함	l .						
영 2	<u>^</u>								월	일		
								성 명			<u>(1)</u>	
주관되	o							출장지				
취급7 인	사 ^공	부무						토() 시				

(앞면)

H

여비지급명세서

요 나 나 의 나이	(청구,4						
청구애	> 〈누 -므(k)						
7	(왕)						
L L	/1다 (원) (원)						
	교통비 (원)						
[יין ז	일/야 역에 숙막표 (원) (원) (원)						
	일/야						
<u>0</u>	면						
	거리						
아	사 (교 (교	()					
K	잒						
상	ですっ						
·Klin	华山市						
	설비 인미						
'k	(베머 기작으수						
4	상						
여행자	니피						
	선 4r						

※기타 식탁료, 이전료, 부임수당, 가족이전료 등이 있을 때 사용

[별지 45]

■ 고창군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48호서식]

구입(물품·기타) 지 출 결 의 서

증 저		ই										
팀	장	재무과장	재	무관		년도 회계	취급	자		지	출	원
					세칕	출과목						
발	의		인	조 직			발	의				인
원인행 기	위부 재		인	정 책			- - 지출부 <i>기</i>	ן צון				인
주	문		인	단 위			/ 2 /	1 / 11	•	•	•	ี น่
납	부		인	세부			지 급 명 발행부기					인
검	수		인	편성목								
물품출기	납부 재		인	통계목			지 급 명 번	령호	제			〉
		급			원(금	<u>1</u> 1		<u> </u>	<u>l)</u>			
이겨	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	항을 승!	+ 함							
			년	-	월	일						
		주 :	소									
		성대	녕			인						
 적 요						거래은	행					
 4 फ	-					계좌번.	<u>ই</u>					
위	금액을	· 청구함.				위	금액을 영	수함	•			
		년 월		일			년	<u>.</u>	월	Ç		
		성 명	인				성 명			인		
주관과	-											
취급자 인	-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이면기재사항 승낙란 및 이면기재사항 생략 가능

(앞)

[별지 46]

■ 고창군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50호서식]

(공사・용역)집행과 지출결의서

증제	호											
팀 7	장 재	무과장	재무	-관			년도 회계	취급기	- 小		지출원	1
					세]출과 5	국					
발	의			인	조 직			발	의	•		인
원인형				인	정 책							
<u>기</u> 계	<u>재</u> 약			인	단 위			지출부기	재			인
		•	• •		세부			지급명				인
준	공 _민 자	•	• •	인	편성목			발행부기 지 급 명				
공사 기	내 상 재			인	통계목				호 호	제		호
		<u>금</u>			<u>ੇ</u>	<u> 년(금</u>			원)	<u> </u>		
본 7	ᅨ약에	있어 이	 면 기자	· 사항· 년	을 승낙함 월	 화.	일					
			주 소 성 명				인					
적요							거래은 경제작번 :					
	의 위 금	액을 청구	 구함.					리 금액을	영수	함.		
	۲	ने ५	월	일				년	월		일	
		성 명		인				성 명		ę	<u>]</u>	
주관과												
취급자 인												

<작성요령> (앞면)

1.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이면기재사항 승낙란 및 이면기재사항 생략 가능 2. 운반, 수리, 임차에 대한 지출시 사용

	공 사 (용 역) 명 세 서													
명	칭	품	질	규격용량	단위칭호	수 i	량	단 :	가	그	액	비	고	

승 낙 사 항

- 1. 시방서 및 도면(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에 의하면 년 월 일 기 공(착수)하고 년 월 일까지 완전히 준공하겠음.
- 2. 관서의 형편에 의하여 일시 공사(용역)를 중지하거나 또는 공사(용역)의 설계(과업)를 변경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에 대하여 이의 또는 하등의 청구를 못할 것. 단, 설계(과업)변경으로 인하여 도급금에게 증감이 생길 때에는 명세의 단가로서 증감하고 그 단가에 의하기 어려울 때에는 관서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단가에 의할 것.
- 3. 기간내 공사(용역)를 완성치 못할 때에는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도급금 액의 1,000분의 ()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청구금액에서 공제하여도 이의가 없을 것.
- 4. 도급금은 전 공사(용역)준공 검사후에 지급함.
- 5. 도급자는 공사(용역)준공 인도일로부터 ()년간 공작(용역)물의 흠에 대하여 담보의 책임을 질 것.

(뒷 면)

[별지 47]

■ 고창군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50-1호서식]

(채무상환)지 출 결 의 서

증	제		<u> </u>	호											
팀	장	재	무고	사장	재무	관				도 계	취급	구자	,	지출원	j
							ጵ	l]출고	가목						
발	٥					인	조 직 정 책				발	의			인
원인 _ 기	.행위투 고			•		인	단위			_	지출부	니기재			인
							세 부 편성목				지 급 발행투				인
							통계목				지급 번		제		호
		l) 	L			Q	년(듣	1. 1	ı		원)		
적	요							거 계	래은형 좌번호	5					
채극	권자		주 상	소 호				병명							
영	수			위	금액을	영수학	함. 년 성	<u>년</u> 당명	월	Ó	<u>]</u>	인			
주: 취:	관과 급자 인														

(앞면)

		지	출	명	세		
금	액		적			요	

(뒷면)

[별지 48]

■ 고창군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50-2호서식]

(이전거래)지 출 결 의 서

증	제		호												
팀	장	재	무과장	재무	-관			년. 회		추	급자		7	지출원	1
						세	출 ፲	과 목							
발	٥	4			인	조 직				발	의				인
원인	행위투	1			인	정 책									
기	, , , , , , , , , , , , , , , , , , ,	Ĥ	•	• •	<u>'</u>	단 위				지출-	부기재				인
						세부				지급	·명령				ما
						편성목				발행-	부기재		•	• •	인
										지급	명령		제		호
						통계목				번	호				
			<u>금</u>			र्	<u> 년(</u> 듣	1.			٩	원)	_		
적	요						거리 계조	H은행 +번호							
채극	권자		주 소 상 호				성명								
영	수		위	금액을	· 영수	≐함. 년 상	년 성명	월	일	<u>!</u>	인				
주:	관과 7-71														
A 7	급자 인														

(앞면)

		지	출	명	세		
급	액		적			광	

(뒷면)

[별지 49]

■ 고창군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50-3호서식]

(교부요청) 지 출 결 의 서 (당해예산)

증 제	~	호					일 상	경 비
팀장	재무과장	재무관		2014년도 일반회계	담당	자	지출·	원
	전 결			세 출 과 목				
발 의		인	조 직	실과명	발 의			인
원인행위부			정 책					
기 재		인	단 위		지출부기재			인
			세 부	별지참조	지급명령			인
			편성목		발행부기재			
			통계목		지급명령 번 호	저] ~ <u>5</u>	<u>5</u>
	<u>총</u> 7	ᆌ 금		원(금		원)		
적 요					거래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채권자	주 소 상 호 성 명							
영 수	위 금액	을 영수함			L ,	년 월 성명	<u>]</u> 일	
주관과 취급자 인								

(앞면)

<신설 >

일상경비 교부 명세서

취급자 : (인)

번 호	지급번호	원인번호	세부사업명	통계목	교부금액	교부부서	비고
	합 계						

(뒷면)

H

巾

[별지 50] ■ 고창군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63호서식]

N/o

仆

স্ত	짜	(기)	F	ďΒ	정리구분	건명	<u>k</u>	예탁기간	아	동	동	당	* 하 하		<u>ت</u>						I
ফ	과			(공						જો	જો	જ			통지함.		1 귀하		中谷		
임 동 지		세입세출외현금	テイでを	음(무						급	급	市			위와 같이 남부하였기에 통지함.	등 등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출납원 귀하	출납원 팀장		_
.Σπ	<u>동</u>		<u>'</u>	Π̈́□	정리구분	건 명	참	예탁기간	증권은	유	유	유	납부자주소	ママ で で	위와 같이 맛	শ্র	세입세출	山 水	4 111	짝	
	과			(급						જ	જ	જ	જ		ি	ر					
早		세출외	ボイでや	음(므						雷	〒	〒	雷	- 나라.	F F			글출납원 인		무고 귀하	
不	<u>동</u>	· 下	<u></u>	ďΒ	정리구분	건 명	格다	예탁기간	승 선 명	상	동	동	河	위와 같이 납부함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별지 51]

■ 고창군 농업기계순회 수리봉사반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농기계순회수리일지

		과 장		
	결제	<u> </u>		
	V ₁₉	취급자		
	장부가격	罗		
u C	· 公	50 -		
T ├ Ŧ	田田			
<u>-</u> 7	पीप	정비점검		
0	十	사 고		
	품 각			
	~	H		
	К	<u> </u>		
	ত ন			
	心 五			

[별지 52]

■ 고창군 농업기계순회	수리보사바	설치우역	조례	시해규치	「増え」	제/중서신
	1 4 0 1 1 1 1 1 1	- - 1 1 0		. 1 0 11 7	1 7 1	/ 11 T T T T T T T

 부 품 수 불 대 장

 (품명:
)
 (단위:
)
 (규격:
)

101-1		구	입	지	출	-	;	결 재			
년월일	적 요(주소)	수량	단가	당일	누계	재 고	취급자	팀 장	과	장	

[별지 53]

■ 고창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직장운동경기부 훈련일지 (제19조제3항 관련)

			경기지도자	팀 장	소	: 장	결
200 년	월 일(ડ	요일)날씨:					재
훈련시간	장 소	참가자	훈 런	내 용		비	고

[별지 54]

■ 고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 규칙 [별지 제35호서식]

	수 입 일	계표	담당자	팀장 기업출납원		
	一 日 日	711 ##				
세항	목	수 입			비고	
		건 수	급 앤			
	합 계					
_	소계					
급	가 정 종					
수	업 무 용					
수	영 업 용					
익	대 중 탕 용					
	산 업 용					
수탁공사	소 계					
	신설공사수입					
수 익	수선공사수입					
	소 계					
기 타	구경별정액요금					
영업수익	수 수 료 수 입					
	잡 수 입					
수입이자	소 계					
및배당금	예 금 이 자					
7 10 0	적 립 기 금 이 자 소 계					
	^					
기타영업	저장품매각수입					
외 수 익	변상금 및 위약금					
	기타잡수익					
외관차관	차 입 금					
공 채	차 입 금					
재정자금	차 입 금					
자 본	시 설 분 담 금					
잉 여 금	타회계건설보조금					
과 년 도	영 업 미 수 금					
	기 타 미 수 금					
기 타						
÷ 11 =						
술납주	의 급 금 융 기 관 의 급 금 융 기 관					
수납수	리급금융기관					

[별지 55]

■ 고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 규칙 [별지 제37호서식]

과 오 납 금 반 환 결 의 서

7] OJ & 1 FOJ	업출납원			발	-		<u>C</u>	리		년	월	일	0
기업물급현				수	-입예신	·산정리	비부등기	ו		년	월	일	@
팀 장				과	오납금	급정리	비부등기]		년	월	일	0
				반	환 통	지	서 발	행		년	월	일	0
담 당 자				반	환통지	기서팀	발행번호	2	제			Ŝ	5
상수도사업특		도 계	(관)				(하)	1		(세형	[] -)	(목)	
	Г												
	 	일금				-	년정 	 					
					-	₩							
채 2	F												
상기 금액-	을 영	수하였음											
			පි	수자	년 성명		열	일	!	0			
적 요													

[별지 56]

■ 고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 규칙 [별지 제38호서식]

과오납금반환통지서

워 부 년도 ○○기업 제 호 회계 출납원 채주 일금: ₩ 다 녉 월 일 발행 녂 일 송부 월 기 업

팀 장

세항

출납원

목

담당자

핝

관

년도 ○○기업 제 호 회계출납원 채 주 일금: ₩ 다 기 금액의 과오납 입금 반환명령을 발 행함. 년 월 일 고창군기업출납원 성명 (1) 고창군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과 핝 세항 목

과오납금반환통지 과오납금반환명령 년도 💚 업 제 호 회계출납원 채주 일금 ₩ 다 상기 금액을 본 명령 지참인에게 지급하시압 년 월 일 고창군기업출납원 성명 <u>@</u> 고창군수도사업 출납하급금융기관 귀하 과 핝 세항 목

과오남금병환필보고서 년도 💚 업 제 호 회계출납원 채주 일금 ₩ 다 상기 금액을 채 주에게 반환하 였아옵기 보고함. 년 월 고 창 군 수 도 사 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교육 원물업 도장고 세 목 과 핝 핝

[별지 57]

■ 고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 규칙 [별지 제40호서식]

증제		호					지	<u> </u>	<u>\$</u>	7	결	의		서		
담당자	E	김 장		기 출 ^년	- 관리자			상수 <u>!</u>			세 출 별회계	담당		} 자	지출원	
								세	출	과	목					
발		의		•			@	장			발	<u>(</u>	의			@
계		약		•			@	관			지출예					@
원이형	행위액등	들기					@	항			원 장	o ′	′			
검		수		•			<u></u>				자금 ⁷ 등	이출 7				(1)
지출예	사토제							세항			0		<u>'</u>			
채무획							@									
채 무	<u>학</u> 확 정 근개장등	및					@	목			수 표	번 _	<u>ਦੇ</u>	제		<u> </u>
						일근	1		계		₩					
적	<u>R</u>															
		주소														
채	주	상호														
		성명	7.01	10	<u></u> 거 ኦ	. al										
명	수	상기	금 ^일 성명	년	ST E		일									
주 괸	 는 과		o o	•												
취 급 (인	- 자															

주: 전도자금출납원이 전도자금을 지급할 때 사용결의서는 본서식을 개서 사용한다. 추산필란 삭제 사용가능(이하 타지출결의서에서도 동일)

(이 면)

		명		세	
급	액		적		<u>Q</u>

[별지 58]

■ 고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 규칙 [별지 제40호의2서식]

증 제	호		봉	급_	지	<u>.</u> i	<u>출</u>	<u>결</u>	0	서	
담당자	틴	장	7]	업 출 납	원	상수	도사	업특별	년도 회계	담당자	지출원
					ı	세	· 출		목		
발 의			@	관				발	의		. 0
원인행위액 등 기			@	ठेठ				지출여 제원정			. 1
채무확정액 등 기			@	세항				자금지 등	출부 기		. @
채무확정 및 원가분개장등기			0	목				수 표 호		제	호
일금				계	₩	Ŧ					_
<u>일</u> 급	-			소 득	세	₩					
<u>일</u> 급	-			지방소득	세	₩					
<u>일</u> 금	-			방 위	세	₩					
<u>일</u> 금	-			기 여	급	₩					
<u>일</u> 금	-			의료보험	료	₩					
<u>일금</u>				현금지급	.액	₩					
	ات ا	월	분 분	봉급 분	홍급[개장	대조	필			
적 요				-	출 근	부	대3	돈필			
				-	위 인] 장	대3	[필			
채 주	상하수도	사업소		과	외	1	명				
. 11	수령대리	인									
	상기 금역	액을 영	수함.								
영 수			녆	월		일					
			성명					@			
주 관 과											
취 급 자 @											

[별지 59]

■ 고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 규칙 [별지 제40호의3서식]

증 제		호				_	구 일]	과	지	출	결	의	서		
담당자	팀	장	7]9	겁출	납원		상 수 및	두 -	트 벽	년도 회 계		담	당자		지출	-원
								출	<u>고 딛</u> 과	<u> </u>						
발	의					@	_1					-1				
원인행위	액등기					@	관			발		의		•	•	@
주	문					1				χ <u>]</u>	<u>출</u> 예	사토				
납	품					1	항				르 " 원장·			•		@
검	수					@										
채무확정	액등기					1	세항				금 7 록부·	지 출 등기			•	(1)
재고분개 채무확정 등				•		0	목				급명 행 박	령서 번 호	제			호
	<u>일급</u> 일급 일급						3가액 }가치세	ł	\ \\							
본 계약	F에 있어	이면	· 기	재시	항을	승년	†함.									
-	주소			l: l	1		월 성덕	년 Ö		일	<u>(</u>)				
생연월	일					업 <i>7</i> 록번 <u>·</u>					거 금	- 응기관				
상기금역	액을 청-							상:	기금액							
성명	년 i	월	C	일 ①					성명	년 	오		일 ①			
	· 관 과			<u> </u>					0 0	<u> </u>						
취 급	자	@														

주: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이 서식에 의한다.

물 품 명 세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고

승 낙 사 항

- 1. 20 년 월 일까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할 것이며 그 납품중 검사 불합격품이 있을 때에는 지정기일까지 교환하겠음.
- 2. 납품기일내에 완납치 못할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1일당 미납품 대가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징수하여도 이의가 없음.
- 3. 납품기한 또는 교환기간일 경과후 10일까지 완납치 못할 때, 납품물품이 사양서. 견본 등과 적합치 않을 때,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이행이 불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하여도 이의신청 또는 기타의 청구를 하지 않겠음.
- 4. 제3호에 의하여 계약해제를 할 때에는 손해배상으로서 계약해제물품의 대가에 대하여 납부기일내에는 100분의 5, 납부기일후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겠음.
- 5. 전 각호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물품대금과 상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별지 60]

■ 고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 규칙 [별지 제40호의4서식]

증 제	호		<u></u> 여	ㅂ]	ᄌ	•	<u>출</u>	<u>결</u>	의	서	
담당자	E	팀 장	7]	업 출	납 원	· 상 <u>-</u>	수도사업	년.]특별회		담당자	지출원
						세			목		
발 의			0	관			발	의			. 0
원인행위액 등 기			@	항			지출 ⁰ 제원정	예산통 당등기			. @
채무확정액 등 기			@	세항			자금 등	지출부 기			. @
채무확정 및 원가분개장등			@	목			수 표	번 호	제		<u>ই</u>
개산급에 대한	한 정산	개 산	그	₩	년 월		일	정 산 역	깩	₩	
	[
	금 L										
			-	₩							_
년 월	일	청구 성 과	¹ 자 명		0	위금	금액을	년 월	를 일어	영수하였	렸음.
근 무 처		과	봉			급	호		수자		@
		계	급	여			- P	<u>d</u> 10	명		
주 관 과	<u>8</u>						출				
취 급 자 ®	무						장 지				

[※] 이 밖의 운반과지출결의서. 공사집행과수선지출결의서 등 서식을 재무회계 규칙에 준하여 작성 사용할 것.

여 행 명 세 서

01	01		출발지 경유지				r 하나기		거 리 와 요 금						1 2		0}	,	11]	
월	일	-	줄밀	^	73	ᅲᄾᅵ	도착지	종	별	거	리	요	급	7] 수		٩F	宁	비]	고
								여	비 덕	병 서	ᅵᅥ									
종		별		내									역							
철	5	<u> </u>]	2 -	등 실	비			₩			3등	·실비					₩		
선		ę]	2 -	등 실	비]			₩			3등	·실비					₩		
거		ㅏ 읻]			km		km	₩											
식		Н]	갑자		일	1일당₩		₩			을지	일		1	일당	₩	₩		
숙	ਸੁ	} <u></u>	!	갑자	ı	야	1야당₩		₩			을지	야	:	1	야당	₩	₩		
현	기교	고통비			·		1일당₩		₩			·						₩		
0]	<u>ج</u>	<u> </u>					부입수당		₩						가	족이?	전료	₩		
합		계	₩			-			•		ı			1				•		
		명령- 조 :				0	청구금 에는					6	D	н) <u>-</u>	ב					

[별지 61]

■ 고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 규칙 [별지 제45호서식]

증 제	-	호				ᅧ	입	フ	1	의	서	
담 당 자	팀	장	기업-	출납원)]		년도 이		담 당 자	۲]	출 원
							· 도 사 별 회	입 계				
발	의			. 0	관		발	의				0
원인행위역	백등기			. 0	항		지출예					0
채무확정역	백등기			. 0	세항		제원장	능기				
채 무 확 원가분개 ⁷				. 0	목		자금 <i>^</i> 기록부					0
	- 금 											
						₩						
지 출 일	자	년 월	일	@	고 저	기서	발 행		년	월	일	0
수 표 번	호	제		호	납	부 7	한		년	월	일	0
반환 고지 번	서 호	제		<u> </u>	납	부	일		년	월	일	@
반 납	자	주소									,	
								성명				@
주 무 :	과	반납시	유									
취급 :	자											

「고창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예방행정 프로그램 변경) 군	제9조(예방행정 프로그램 변경)
수는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	
로그램의 추가, 변경, 삭제가 필	
요한 경우 <u>안전행정부장관</u> 에게 수	<u>행정자치부장관</u>
정을 요청할 수 있다.	

「고창군 법무행정사무처리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 정 안
제18조(제소사항보고) 지방자치법	제18조(제소사항보고)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	
수는 도지사를 거쳐 <u>안전행정부장</u>	<u>행정자치부장관</u>
<u>관</u> 에게 즉시 그 내용을 별지 제7	
호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49조(관리책임자) ① 각 실과소	제49조(관리책임자) ①
및 읍·면의 법규집 관리책임자	출
는 <u>주무담당</u> 으로 하며, 관리책임	무팀장
자는 추록을 수령한 날부터 늦어	
도 2일 이내에 가제정리를 하는	
등 상시 열람이 가능하도록 선량	
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고창군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제14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	임무) ①
재가 발생한 때 에는 지체없이 다	
음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에의 연락 및 군	1
수·부군수· <u>행정지원과장</u> 에게	<u></u> 자치행정과장
보고	
2. · 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고창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자료의 타기관 제공) 입력된	제9조(자료의 타기관 제공)
자료를 외부의 부가통신사업자 등	
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	<u> </u>
전에 <u>행정지원과장</u> 과 협의하여야	행정과장
한다.	
제11조(운영부서) "군수에게바란다	제11조(운영부서)
", "군수동정"에 관한 게시판은	
군수가 지정한 자로 하여금 관리	
토록 하고, "민원관련코너"는 <u>행</u>	<u> </u>
정지원과에서 운영토록하며, 각	
종 "신고센타"는 신고업무 관련부	
서에서 직접 운영한다.	
제12조(주민의견의 처리) ① 각 부	제12조(주민의견의 처리) ①
서의 게시판 자료관리담당자(이	자료관리담당자

하 "자료관리담당"이라 한다)는 매일 주민의견 게시판을 검색하여 주민의견게시판 접수처리부 별지 서식에 등재한 후 즉시 처리주무 팀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 ②·③ (생 략)
- ④ 처리주무팀장은 처리결과를 <u>자</u> <u>료관리담당에</u> 즉시 통보하여야 하 며 <u>자료관리담당은</u> 처리결과를 주 민의견게시판 접수처리부 등에 등 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⑤ 처리결과는 해당부서의 <u>자료관</u> <u>리담당이</u> 직접 홈페이지 게시판에 입력한다.
- 제14조(프로그램 관리) 홈페이지 프로그램은 <u>행정지원과장</u>의 사전 동의없이 수정·삭제 및 복사와 외부유출을 할 수 없다.

제15조(단말기 운영관리)

- ① (생략)
- ② <u>행정지원과장</u>은 자료관리책임 자와 협의하여 사용부서별 단말기 의 자료접근권한을 부여할수 있 다.
- 제17조(자료의 관리) ① <u>행정지원과</u> <u>장</u>은 홈페이지와 관련하여 주기적으로 백업된 자료의 보관은 1년으로 하며 자료는 안전한 곳에 별도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자료
	<u> </u>
	담당자가
제	14조(프로그램 관리) <u>자치행정과장</u>
	15조(단말기 운영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u>자치행정과장</u>
	17조(자료의 관리) ① <u>자치행정과</u> `
	<u>장</u>

보관토록 한다.

② <u>행정지원과장</u>은 자료의 손상 및 파괴사고에 대비하여 입력된 자료와 로그파일을 주기적으로 복 사하여 보관함으로써, 사고시 신 속히 복구 가능토록하여야 한다.

2	<u> 자치행정과장</u>	
	.	

「고창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
리) ① (생 략)	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근무상황부는 각 기관은 부서	2
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 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u>담당단위</u> 로	<u>팀단위</u>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 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고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기금관리공무원) 조례 제15	제7조(기금관리공무원)
조제1항의 기금관리공무원은 기	
금담당과장이 기금운용관이 되	
고, <u>담당주사가</u> 기금출납원이 된	<u>o]</u>
다.	

「고창군 군세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소인불일치자료 등의 처리)	제18조(소인불일치자료 등의 처리)
①・② (생 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부과업무와 징수업무가 동일 부	③
서내에 <u>담당별</u> 로 구분되어 있는 경	<u>팀별</u>
우 정보처리장치에 관련 정보가 입	
력된 때에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고창군 재무회계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①
한다) 제91조 및 「지방재정법시행	
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13	
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	
다.	
1. 본청	1
가. ~ 타. (생 략)	가. ~ 타. (현행과 같음)
파. 일상경비출납원 - 각 실·과	파 <u>서</u>
<u>서무업무담당</u>	<u>무업무팀장</u>
하. (생 략)	하.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1관서(읍·면에 대해서는 제5	3
호에서 별도 지정)	
가. ~ 자. (생 략)	가. ~ 자. (현행과 같음)

차.	일상경비출납원	-	각	실	•	과
入]무업무담당					

4. 그밖의관서 · 임시관서

가. ~ 라. (생 략)

마. 수입금출납원 - 서무업무담당 부서의장·과장직제가 없는 경 우는 서무업무담당

바. (생 략)

- 5. (생략)
- ② ~ ⑤ (생 략)

제20조(예산의 정리)

- ① (생략)

③ (생 략)

차 <u>서</u>			
<u>무업무팀장</u>			
4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u>서무업무팀장</u>			
바.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0조(예산의 정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고창군의회 사무과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신ㆍ구조문대비표

③ (현행과 같음)

「고창군 새농민양성소 설치 조례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직원) ① 새농민양성소의 효	제2조(직원) ①
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와 같이 관리인을 둘 수 있다.	
1. 농민훈련 및 <u>농기계담당</u> (농촌	1 <u>농기계팀장</u>
지도사)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고창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 ~ ③ (생 략)	제3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
	음)
④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	4
을 두되, 간사는 농업기술센터의	
농촌개발과장을, 서기는 <u>사회개발</u>	<u>지도행정팀장</u>
<u>팀장</u> 으로 하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하며, 서기	
는 간사를 보좌한다.	

「고창군 자연경관보전 조례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위원회 조직 및 운영)	제10조(위원회 조직 및 운영)
① ~ ④ (생 략)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	5
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주관 <u>담당</u> 이 된다.	<u>팀장</u> .

「고창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인사위원회)	제3조(인사위원회)
① ~ ④ (생 략)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5
간사를 두되, 간사는 <u>체육업무담</u>	<u>체육업무팀장이</u>
<u>당주사가</u> 된다.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 고창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신고방법) ① (생 략)	제4조(신고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받은	2
<u>청소년업무담당</u> 은 신고내용을 별	<u>청소년업무팀장</u>
지 제1호서식에 따른 기록·보존	
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	
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고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지방공기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 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과고창군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설치조례(이하 "설치조례"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관리자가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직을 지정하여 행할 수 있다. 1. (생 략) 2. 지출원 : 경리업무담당	제2조(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3. 수입원 : <u>세입업무담당</u>	3 <u>세입업무팀장</u>
4. 자산출납원 : <u>자산업무담당</u>	4 <u>자산업무팀장</u>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105조(자산 재평가) 공기업자산을 5	제105조(자산 재평가)
년마다 1월 1일을 현재를 기준으로 재평가할 때에는 <u>행정안전부</u> 의 자산 재평가요령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 다.	<u>행정자치부</u>
제113조(발주시기) 재고자산 구입의	제113조(발주시기)
발주는 재고자산수급계획에 따라 매	
분기초에 정기적으로 발주하는 것을	(に) 71.)
원칙으로 하고, 주문품에 대하여는 주관과(담당)·소장의 청구에 따라	(팀장)
발주한다. 다만, 사업계획의 변경	·
등 물동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소요부서가 재고자산수급계획 수정	
요구서 별지 제62호서식을 작성·청	
구하여 재고자산수급계획을 수정한	
후 구입 할 수 있다.	

고창군 고시 제2016-8호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7항에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제12조,에 따라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19일

고창군수

1. 사업목적 : 임야를 개간하여 농지확대 개발

2. 사업시행자 : 신종식

3. 사업의 내용 및 구역 : 소규모 자력 개간사업

	소 재 지		-1.0	지적면적	승인면적	-11-1-0	
읍.면	리	지번	지목	(m²)	(m²)	개간용도	비고
무장	신촌	산107-5	임	14,339	4,976	전작용	

- ○. 사업개요 : 막갈기 및 흙바수기 4,270㎡, 토공배수로 277m, 밭두렁쌓기 194m, 침사지 3개소 등
- 4. 사업비 예정금액 : 3,000천원
- 5. 사업예정 기간 : 2016. 1월~ 2016.12.31.
- 6. 사업의 효과 : 농지조성을 통한 밭작물 재배로 농업소득 증대

고창군 고시 제2016 - 10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라 건물 등에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와 변경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1, 22,

고창군수

○ 도로명주소 부여 : 전북 고창군 고창읍 태봉로 582 **외 7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u></u>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민원봉사과(☎560-2415)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홈페이지(www.juso.go.kr), 고창군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전면시행

- 도로명주소는 2014. 1. 1. 부터 공법관계는 물론 우리의 모든 생활주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순번	지 번	도로명 주소
1	전라북도 고창군 흥덕면 치룡리 740	전라북도 고창군 흥덕면 구동길 22-10
2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검산리 632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질마재로 270-11
3	전라북도 고창군 흥덕면 치룡리 714	전라북도 고창군 흥덕면 부안로 139-30
4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월곡리 324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상월1길 14
5	전라북도 고창군 대산면 매산리 175-29	전라북도 고창군 대산면 사거3길 2
6	전라북도 고창군 무장면 목우리 535-24	전라북도 고창군 무장면 학천로 520-1
7	전라북도 고창군 해리면 하련리 135-6	전라북도 고창군 해리면 남시길 26
8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덕정리 464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태봉로 582

고창군 고시 제2016-11호

고창 군관리계획(유원지)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고창 군관리계획(유원지) 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동법률시행령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결정하고, 동법률 제32조, 동법률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고창군청 건설도시과(063-560-256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고 창 군 수 2016년 1월 29일

1. 고창 군관리계획(유원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조서: "변경없음"

가. 군계획시설(유원지) 결정(변경) 조서

7 Н	도면	가 사 대	위치	면	적(m²)	최초	비고
구분	표시 번호	시설명	취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끄
기정	1	유원지	부안면 용산리 591번지 일원	165,371.5	-	165,371.5	전라북도고시 2010-171호 2010.07.09	계획 관리 지역

2. 고창 군관리계획(유원지)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

가. 군계획시설(유원지) 이용계획확정(변경) 조서

		н.	지면적((m²)	구성	वेमा		건 최			
구분	세부시설명	<u> </u>	시인식((111)	(9	6)	건축	면적		연면적	비고
十七	게구시결정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용적률산정용)	미끄
합계	-	165,371.5		165,371.5	100.0	100.0	4,235.79	4,323.79	6,120.38	6,208.38 (5,820.38)	
유희 시설	어린이놀이터	1,316.3		1,316.3	0.8	0.8	-	_	-	_	
휴양 시설	숙박시설, 이영장, 취사장, 이유화장	16,382.0		16,382.0	9.9	9.9	325.07	413.07	385.15	473.15 (473.15)	다용도 창고신축
특수 시설	식물원	3,439.8		3,439.8	2.1	2.1	987.00	987.00	987.00	987.00 (987.00)	
편익 시설	일반음식점 및 매점, 일반 목욕 장, 매점	12,944.8		12,944.8	7.8	7.8	1,029.53	1,029.53	1,679.13	1,679.13 (1,435.83)	
관리 시설	도로, 주차장, 화장실, 광장, 관리동	64,232.2		64,232.2	38.8	38.8	206.00	206.00	206.00	206.00 (206.00)	
기타 시설	웰빙식품센터 계류, 벽천, 배수지	15,719.1		15,719.1	9.5	9.5	1,688.19	1,688.19	2,863.10	2,863.1 (2,718.4)	
녹지 시설	녹 지	51,337.3		51,337.3	31.1	31.1	-	_	-	-	

(나) 퍼

나. 세부시설 결정(변경)조서

1	丑	日で、小田		小 王	기타기사파	I	비기면전(교)	ري	7.44	1/0/1			は水に	드 면접/~	(2		기초된	발	
1							107		0	(o)	7,17		, ,		장	II V	, ¹	ا لا الا	F F
1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기로 교		松						기정		天0	त इगस्०	변경후	7 8		[변식 변경학(용적률신정)	왕기정	电路	# II
1 1 1 1 1 1 1 1 1 1						165,371.5		165,371.5			35.79 €.			6,120.38	€)88.00	6,208,38(5,820,38	- (8	1	
1 1 1 1 1 1 1 1 1 1	이름 기사		계		소교	1,316.3		1,316.3	8.0	8.0	1	1	1	-	-	1	ı	-	
소 계 本 계 L6.382 0 16.382 0 9.9 9.9 32.07 등 880 0 43.18 (3.88 0 47.18 (47.28) 5 - <t< th=""><th>エゴヘビョ</th><th></th><th>이놀이터</th><th></th><th>거린이놀이터</th><th>1,316.3</th><th></th><th>1,316.3</th><th>8.0</th><th></th><th></th><th>1</th><th>ı</th><th></th><th>ı</th><th>I</th><th></th><th>ı</th><th></th></t<>	エゴヘビョ		이놀이터		거린이놀이터	1,316.3		1,316.3	8.0			1	ı		ı	I		ı	
1			灭	.,	河	16,382.0		16,382.0	6.6		_	00.88	413.07		증)88.00	473,15(473,15	<u>۔</u>	ı	
1			박시설	3-1	숙박시설	4,683.2		4,683.2	2.8		-	00.88(362.80		€)88.00	422,88(422,88		2	
1			영장1	3-2	야영장1	5,426.5		5,426.5	3.3	3.3	ı	ı	1	ı	ı	ı	ı	ı	
19			영장2	3-3	야영장2	5,236.2		5,236.2	3.2	3.2	1	ı	1	ı	ı	ı	1	ı	
1			사장	3-4	취사장	137.1		137.1	0.1		50.27	1	50.27	50.27	ı	50,27(50,27	7	1	
1			유회장	3-5	아유회장	899.0		0.668	0.5	0.5		-	-	1	1	ı	1	-	
1			판	.,		3,439.8		3,439.8	2.1		87.00	1	987.00	987.00	ı	987.00(987.00		ı	
4-1 식물원 4-1 식물원 3.4398 3.4398 2.1 2.1 987.00 987.00 987.00 987.00 987.00 987.00 987.00 987.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0.0 10.0 20.0 10.0 20.0<	특수시설			1	ı	ı		ı	ı	ı	ı	ı	ı	ı	ı	ı	ı	ı	
1.			돌	4-1	식물원	3,439.8		3,439.8	2.1		87.00	ı	987.00	987.00	ı	987.00(987.00	0) 1	1	
1			軍			12,944.8		12,944.8	7.8		29.53	- 1	029.53	1,679.13	-	1,679.13(1,435.83	- 6	-	
5-8 바 점 5-2 바 점 1,615.1 1,615.1 1,0 1,0 300.00 300.000.00 1,0		5-1 健學	名 图 号 配		보음식점 및 매점			1,799.5	1.1		00.00	ı	100,001	200.00	ı	200,00(200,00		2	
5-3 일반목점점 5-3 일반목점점 9,530.2 6,732.2 8.8 8.60 - 629.53 1,179.13 - 1,179.13(935.83) 2 4	_		市石	5-2	파 쩐	1,615.1		1,615.1	1.0		00.00		300,008	300.00	ı	300.00(300.00)) 1	1	
1	1		구목용장	2-3		9,530.2		9,530.2	5.7		29.53		629.53	1,179.13	ı	1,179.13(935.83		2	
1			平		严	64,232.2		64,232.2	38.8		00.90	ı	206.00	206.00	ı	206.00(206.00		ı	
6-1 주차장1 6-1 주차장1 1.191.3 0.7 0.7 -		버	떠			23,000.7		23,000.7	13.8	13.8	1	-	-	-	ı	I	ı	-	
6-2 주차장2 6-2 주차장2 10,987.3 6.6 6.6			차장1	6-1	주차장1	1,191.3		1,191.3	0.7	0.7	1	ı	ı	ı	ı	ı	ı	ı	
6-3 주차장3 6-3 주차장3 10,987.3 10,987.3 6.6 6.6			차장2	6-2	주차장2	3,288.4		3,288.4	2.0	2.0	1	ı	ı	ı	ı	I	ı	ı	
6-4 주차장4 6-4 주차장4 192.4 0.1 -			차장3	6-3	주차장3	10,987.3		10,987.3	9.9	9.9	ı	-	ı	ı	ı	I	ı	ı	
6-5 화장실1 6-5 화장실1 312.9 0.2 100.54 100.54 100.54 100.54 100.54 100.54(100.54) 1 6-6 화장실2 321.7 0.2 0.2 55.19 55.19 55.19(55.19) 1 6-7 중앙광장 15,192.9 9.2			차장4	6-4	주차장4	192.4		192.4	0.1	0.1	ı	1	ı	ı	ı	I	ı	ı	
6-6 화장실2 6-6 화장실2 821.7 0.2 0.2 55.19 55.19 55.19 55.19 - 55.19(55.19) 1 8 1 4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장실1	9-2	화장실1	312.9		312.9	0.2		00.54	1	100.54	100.54	ı	100.54(100.54	1)	1	
6-8 전임광장 6-7 중앙광장 6-7 (20 당 5) 15,192.9 (2) 2. 11.0. (2) 2. 11.0. (3. 1.3. 1.3. 1.3. 1.3. 1.3. 1.3. 1.3.			장실2	9-9	화장실2	321.7		321.7	0.2		55.19		55.19	55.19	ı	55.19(55.19	3) 1	1	
6-8 진입광장1 6-8 전입광장2 110.0 1.3 -			앙광장	2-9	중앙광장	15,192.9		15,192.9	9.2	9.5	1	-	-	-	ı	I	ı	-	
6-9 진입광장2 6-9 진입광장2 6-9 진입광장2 6-1 -1				8-9	진입광장1	2,110.0		2,110.0	1.3	1.3	1	1	ı	1	ı	I	ı	ı	
6-10 이벤트광장 6-10 이벤트광장 6-10 이벤트광장 2,142.1 1.3 -			김광장2	6-9	진입광장2	113.6		113.6	0.1	0.1	ı	1	1	ı	ı	ı	ı	-	
6-11 상징광장 (4.599.3) 2.8 2.8 -	٠			6-10	이벤트광장	2,142.1		2,142.1	1.3	1.3	1	ı	ı	ı	ı	ı	ı	ı	
6-12 잔니광장 6-12 잔니광장 640.8 0.4 -				6-11	상징광장	4,599.3		4,599.3	2.8	2.8	ı	ı	ı	ı	I	ı	1	-	
6-13 관리동 6-13 관리동 138.8 0.1 0.1 50.27 - 50.27 - 50.27 1 - <	<u> </u>			6-12	잔디광장	640.8		640.8	0.4	0.4		-	ı	ı	ı	ı	ı	-	
소계 소계 15,719.1 9.5 9.51,688.19 - 1,688.19 - 1,688.19 - 2,863.10 - 2,863.10 - 2,863.10 -	<u>. w</u>			6-13	관리동	138.8		138.8	0.1		50.27	ı	50.27	50.27	ı	50.27(50.27	7	1	
7-1 웰빙식품센팅 7-1 웰빙식품센팅 7-1 웰빙식품센팅 7-1 월빙식품센팅 7-1 40 입사 급 7-1 40 [2.86]			T.	,	수	15,719.1		15,719.1	9.5	9.5 1,68	88.19			2,863.10		2,863.10(2,718.40		ı	
7-2 계류 7-2 계류 2,933.1 1.8 1.8 -		7-1 웰빙	식품센터		웰빙식품센터	11,558.7		11,558.7	7.0	7.0 1,68	88.19			2,863.10		2,863.10(2,718.40		2	
7-3 벽천 7-3 벽천 382.7 0.2 0.2	_				받	2,933.1			1.8	1.8	1	1	1	1	1	ı	1	ı	
7-4 배수지 7-4 배수지 844.6 0.5 0.5 -<			地	7-3	重松	382.7		382.7	0.2	0.2	1	ı	ı	ı	ı	ı	1	ı	
8-1 녹지 8-1 녹지 51,337.3 51,337.3 31.1 31.1			l 수지	7-4		844.6		844.6	0.5	0.5	1	1	1	ı	ı	ı	1	1	
				8-1	দ	51,337.3		51,337.3	31.1	31.1		ı	ı	ı	ı	1	ı	ı	

다. 군계획시설(유원지) 조성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3-1: 숙박시설) 건축면적(연면적) 변경 기 정 : 274.80㎡(334.88㎡) 변 경 : 362.80㎡(422.88㎡) 증)88.00㎡(88.00㎡) 	 토지의 효율성을 증진시켜 보다 나은 고창의 관광도시 이미지 창출과 관광산업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복분자테마유원지의 조성계획변경(유원지내 세부시설:국민여가 캠핑장내 다용도 창고 신축)결정(변경) 하고자 함.

3. 고창 군계획시설(유원지:복분자테마유원지) 지구내도로 조서"변경없음"

		규	모			ርብ ሂት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비고
기정	중로	1	1	20	지구내도로	515	용산리57-4	용산리43-2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1	12	지구내도로	182	용산리43-4	용산리44-20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1	10	지구내도로	81	용산리759-38	용산리759-38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1	6	지구내도로	173	용산리749-41	용산리44-48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2	6	지구내도로	127	용산리749-55	용산리44-48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3	6	지구내도로	96	용산리44-48	용산리759-42	일반도로	
기정	산책로	1	1	5	산책로	311	용산리759-35	용산리44-39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산책로	1	2	5	산책로	12	용산리49-14	용산리759-1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산책로	1	3	5	산책로	8	용산리750-12	용산리49-17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산책로	2	1	3	산책로	110	용산리759-12	용산리597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산책로	2	2	3	산책로	15	용산리597	용산리597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산책로	2	3	3	산책로	105	용산리759	용산리759-46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산책로	1	4	5	산책로	35	용산리759-46	용산리759-12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산책로	2	5	3	산책로	17	용산리759-46	용산리759-46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산책로	3	1	2	산책로	34	용산리759	용산리759-17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산책로	3	2	2	산책로	67	용산리759-16	용산리759-46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산책로	3	4	2	산책로	14	용산리759-45	용산리759-12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산책로	3	5	2	산책로	10	용산리602	용산리602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산책로	3	6	2	산책로	70	용산리759-27	용산리759-28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산책로	3	7	1.5	산책로	20	용산리759-16	용산리759-17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산책로	3	8	1.5	산책로	34	용산리759-17	용산리759-12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산책로	3	9	1.5	산책로	28	용산리759-12	용산리759-46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산책로	3	10	1.5	산책로	13	용산리759-12	용산리759-46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산책로	3	11	1.5	산책로	30	용산리759-12	용산리759-12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산책로	3	12	1.5	산책로	13	용산리759-12	용산리759-12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산책로	3	13	1.5	산책로	19	용산리759-46	용산리759-46	보행자전용도로	

4. 고창 군관리계획(유원지) 조성계획·토지이용계획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고시도: "실음생략" 고창군 고시 제2016 - 12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라 건물 등에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와 변경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2. 5.

고창군수

○ 도로명주소 부여 : 전북 고창군 성송면 계당길 3 외 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5	<u> </u>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민원봉사과(☎560-2415)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홈페이지(www.juso.go.kr), 고창군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전면시행

- 도로명주소는 2014. 1. 1. 부터 공법관계는 물론 우리의 모든 생활주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순번	지 번	도로명 주소
1	전라북도 고창군 성송면 계당리 213-3	전라북도 고창군 성송면 계당길 3
2	전라북도 고창군 성내면 월산리 766	전라북도 고창군 성내면 월산대흥길 131-47
3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사창리 87-1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진목길 56-8

고창군 고시 제2016-13호

고창 군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고창군계획시설(공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변경)인가하고, 같은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고창군청 건설도시과(☎063-560-2565)에 비치하고 일 반인에게 보입니다.

> 고 창 군 수 2016년 02월 12일

1. 실시계획인가 내용

구 분	사업의 종	류 및 명칭	사업	규모 또는	시행자의	착공예정일	비고
1 판	종 류	명 칭	시행지	면적(m²)	성명 및 주소	및 준공예정일	H135
당초	군계획 시설(공원)	죽림선사마을 조성사업	고창읍 죽림리 746번지 일 원	A=9,859 m²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고창군수	실시계획인가일 ~ 2015. 12. 31.	
변경	군계획 시설(공원)	죽림선사마을 조성사업	고창읍 죽림리 746번지 일 원	A=46,459m²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고창군수	실시계획인가일 ~ 2016. 04. 30.	

-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따로 붙임
- 3.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 4. 관계도서 : 게재생략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공원)

공사명 : 죽림 선사마을 조성사업

	디																												
이	권리의 종류 및 내용																												
(c) (c) (d) (d) (d) (d) (d) (e) (e) (e) (e) (e) (e) (e) (e) (e) (e	Κ⊦																												
	至0 至0																												
4 4 4 4 4	κ⊦ ∢																												
	至0 日0		고창구	고창고	고창구	고창군	고창군	고창구	고창구	고창구	고창군	고창구	고창군	고창구	고창구	고창구	고창군	고양고	고창구	고창구	고창구	고창고	고창구	니창구	고창군	국(농림수산부)	국(농림수산부)	고창군	국(건설부)
स्र	(m) (m)	46,459	9,116	527	6,704	982	351	73	187	252	89	167	2,464	248	1,206	5,227	2,442	2,130	76	9/	580	234	2,980	126	2,046	1,299	6,582	308	80
뫼	공부상면적 (㎡)	125,707	9,116	527	6,704	385	351	73	187	252	89	167	2,464	248	1,206	5,227	2,442	2, 130	1,306	733	3,374	3,070	2,980	126	2,548	48,083	29,291	1,738	314
도 애	(왕 왕 (학		מנ	ال ال	من	ال ال	ەل	مرت	مرت	מל	מל	ال ال	۵۵	מלי	מל	מל	מל	מל	מל	מל	מלו	מל	나	나	버	나	M	ō0	赵
기대	(II) (II)		746	746-1	746-2	746-3	747-1	748-1	749-1	750-1	751-1	752-1	753	753-1	753-2	754	754-1	754-2	757	757-1	758	759	974	974-1	975	966	666	산63-14	산63-4
			죽림김	-			=	=	=	=	=	=	п	=	=	п			п	=	=				=		=	=	=
소재기	(미) 되	严	고창읍		=	=	=	=	=	=	=	=	-	=		=	п	=	=	=	=	=	=		=	Ξ		=	
,	시·군	向	고창군	=	=		=	=	=	=				.=		=	=		=		=	=	=	=	=	=	-	=	
의 꾀			-	2	က	4	2	9	7	8	6	10	Ξ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56	27

고창군 고시 제2016-14호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7항에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개간사업 추진에 관한규정」제12조,에 따라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2일

고창군수

1. 사업목적 : 임야를 개간하여 농지조성

2. 사업시행자 : 탁 형 춘

3. 사업의 내용 및 구역 : 소규모 자력 개간사업

소 재 지		-1 =	지적면적	승인면적	-11-1 0		
읍.면	리	지번	지목	(m²)	(m²)	개간용도	비고
구유	칠암	산135	임	80,845	23,634	전작용	

- ○. 사업개요 : 벌개제근 23,396㎡, 흙깍기 2,476㎡, 토사측구 759m, 산마루 측구 440m, 침사지 6개소, 가설방음 방진망 1.620㎡ 등
- 4. 사업비 예정금액: 126,929천원
- 5. 사업예정 기간 : 2016. 2월~ 2016.12.31.
- 6. 사업의 효과 : 농지조성을 통한 밭작물 재배로 농업소득 증대

고창군 고시 제2016 - 17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라 건물 등에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와 변경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2, 19,

고창군수

○ 도로명주소 부여 : **전북 고창군 고수면 은사길 18-19 외4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민원봉사과(☎560-2415)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홈페이지(www.juso.go.kr), 고창군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전면시행

- 도로명주소는 2014. 1. 1. 부터 공법관계는 물론 우리의 모든 생활주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순번	지 번	도로명 주소
1	전라북도 고창군 고수면 은사리 876	전라북도 고창군 고수면 은사길 18-19
2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성두리 489-7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고인돌대로 1959
3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신월리 122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신월길 50-1
4	전라북도 고창군 고수면 상평리 845	전라북도 고창군 고수면 고수로 148
5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840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복분자로 434-36

고창군 고시 제 2016 - 19호

도로명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4 규정에 따라 도로명을 변경하고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 2. 26

고 창 군 수

1. 고시일 : 2016. 2. 26

2. 고시방법 :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3. 도로명 변경 고시 내용 : 붙임 참조(조서 및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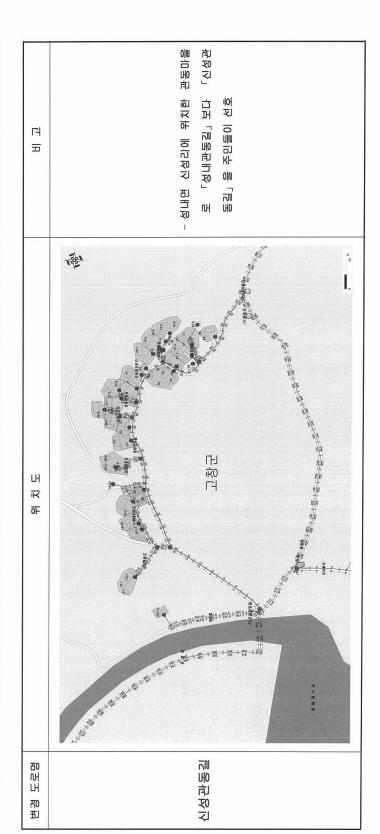
계(개)	대로	로	길	비고
1	_	_	1	

4. 도로명(도로구간)의 변경 절차

- ※ 도로명 변경은 최초 도로명 고시일 3년 경과 후 가능하며, 폐지된 도로명은 폐지된 날로부터 최소한 5년 동안은 다시 사용할 수 없음.
-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 종합민원과 지적팀(☎063-560-2414)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명 변경 조사

변경 사유	주민의 원(신청)에 의한 도로명 변경		
기초간격(m)	20	20	
연 장(៣)	623	623	
KI0 KO	성내면 신성리 934	성내면 신성리 934	
기점	성내면 신성리 산10-6	성내면 신성리 산10-6	
B 당	성내관동길	신성관동길	
위 계	딘	짇	
법정구역리	성내면 신성리	성내면 신성리	
마	면 여 전	변경후	



순번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1	전라북도 고창군 성내면 성내관동길 53-6	전라북도 고창군 성내면 신성관동길 53-6
2	전라북도 고창군 성내면 성내관동길 45-5	전라북도 고창군 성내면 신성관동길 45-5
3	전라북도 고창군 성내면 성내관동길 43 (관동마을회관)	전라북도 고창군 성내면 신성관동길 43 (관동마을회관)
4	전라북도 고창군 성내면 성내관동길 49	전라북도 고창군 성내면 신성관동길 49
5	전라북도 고창군 성내면 성내관동길 45-4	전라북도 고창군 성내면 신성관동길 45-4
6	전라북도 고창군 성내면 성내관동길 15-23	전라북도 고창군 성내면 신성관동길 15-23
7	전라북도 고창군 성내면 성내관동길 15-7	전라북도 고창군 성내면 신성관동길 15-7
8	전라북도 고창군 성내면 성내관동길 45-1	전라북도 고창군 성내면 신성관동길 45-1
9	전라북도 고창군 성내면 성내관동길 45-3	전라북도 고창군 성내면 신성관동길 45-3
10	전라북도 고창군 성내면 성내관동길 45-6	전라북도 고창군 성내면 신성관동길 45-6
11	전라북도 고창군 성내면 성내관동길 37-1	전라북도 고창군 성내면 신성관동길 37-1
12	전라북도 고창군 성내면 성내관동길 37-3	전라북도 고창군 성내면 신성관동길 37-3
13	전라북도 고창군 성내면 성내관동길 35-1	전라북도 고창군 성내면 신성관동길 35-1
14	전라북도 고창군 성내면 성내관동길 35-3	전라북도 고창군 성내면 신성관동길 35-3
15	전라북도 고창군 성내면 성내관동길 29-6	전라북도 고창군 성내면 신성관동길 29-6
16	전라북도 고창군 성내면 성내관동길 15-17	전라북도 고창군 성내면 신성관동길 15-17
17	전라북도 고창군 성내면 성내관동길 15-19	전라북도 고창군 성내면 신성관동길 15-19
18	전라북도 고창군 성내면 성내관동길 15-21	전라북도 고창군 성내면 신성관동길 15-21
19	전라북도 고창군 성내면 성내관동길 25	전라북도 고창군 성내면 신성관동길 25
20	전라북도 고창군 성내면 성내관동길 31	전라북도 고창군 성내면 신성관동길 31
21	전라북도 고창군 성내면 성내관동길 33	전라북도 고창군 성내면 신성관동길 33
22	전라북도 고창군 성내면 성내관동길 55	전라북도 고창군 성내면 신성관동길 55
23	전라북도 고창군 성내면 성내관동길 39	전라북도 고창군 성내면 신성관동길 39
24	전라북도 고창군 성내면 성내관동길 41	전라북도 고창군 성내면 신성관동길 41
25	전라북도 고창군 성내면 성내관동길 47	전라북도 고창군 성내면 신성관동길 47
26	전라북도 고창군 성내면 성내관동길 48	전라북도 고창군 성내면 신성관동길 48
27	전라북도 고창군 성내면 성내관동길 51	전라북도 고창군 성내면 신성관동길 51
28	전라북도 고창군 성내면 성내관동길 51-1	전라북도 고창군 성내면 신성관동길 51-1

고창군 고시 제 2016 - 20 호

노동지구 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 기본계획 고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 38조 규정에 의거 노동지구 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하고 농어촌정비법 제5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일

고 창 군 수

- 1. 사 업 명 : 노동지구 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
- 2. 목 적
 - 농촌마을의 기초생활기반확충, 경관개선, 소득증대확충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이 살고 싶고 도시민이 찾고싶은 쾌적한 정주공간으로 조성하여 희망과 활력을 고취함으로써 농촌사회 유지 도모
- 3. 사 업 비 : 430백만원(지특 70% 지방비 30%)
- 4. 주요 사업내용
 - 지역경관개선분야 : 테마정원 조성(친환경블럭포장, 주차공간조성, 수목식재)
 - 지역역량강화분야 : 교육, 컨설팅, 홍보마케팅, 경영지원 등
- 5. 사업시행자 : 고창군수(위탁시행자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
- 6. 사업시행기간 : 2016. 3. ~ 2016. 12.

고창군 고시 제2016 - 21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라 건물 등에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와 변경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3. 4.

고창군수

○ 도로명주소 부여 : 전북 고창군 고창읍 주곡2길 11 외4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5	<u> </u>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민원봉사과(☎560-2415)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홈페이지(www.juso.go.kr), 고창군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전면시행

- 도로명주소는 2014. 1. 1. 부터 공법관계는 물론 우리의 모든 생활주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순번	지 번	도로명 주소
1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주곡리 258-1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주곡2길 11
2	전라북도 고창군 상하면 용정리 산103-2	전라북도 고창군 상하면 서당2길 33
3	전라북도 고창군 상하면 자룡리 491	전라북도 고창군 상하면 구시포해변길 140-13
4	전라북도 고창군 상하면 용대리 185	전라북도 고창군 상하면 선운대로 488-18
5	전라북도 고창군 해리면 송산리 367	전라북도 고창군 해리면 해리송산길 50

고창군 제2016 - 40호

2016년 고창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고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2016 고창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1 월 11 일

고 창 군 수

- 1. 지원대상 : 고창군내 소재 공장등록 중.소 제조업체
 - 가. 지역특화상품 생산업체
 - 나. 계획입지(공업단지, 농공단지, 특화단지) 입주업체
 - 다. 군수가 지정한 유망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사업
 - 마.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2. 지원조건

- 가. 지원한도 : 업체당 최고 5억원
 - ※ 전라북도에서 기 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대출잔액을 포함하여5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나. 자금용도 : 운전자금
- 다. 융자기간 및 상환: 3년거치 일시상환(1회에 한해 1년 연장가능)
- 라. 대출금리 : 변동금리(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결정)
- 마. 고창군 이차보전 지원 : 4%

3. 융자신청

가 신청기간

- 상반기 : 2016. 1. 11 ~ 1. 29까지

- 하반기 : 2016. 6. 1 ~ 6. 30까지

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고창군홈페이지 (http://www.gochang.go.kr) → 군민참여 → 군정소식 → 고시/공고 → 2016년 고창군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에서 다운로드
- 접 수 처 : 고창군 민생경제과 (Tel 063-560-2355)

다. 구비서류

-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1부.
- 대출상담 확인서 1부.
-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제표(세무서 및 공인회계사 확인필)1부.
- 기타 지원대상 증빙서류 (수출실적 증빙서류, 품질우수 인증서 등) 1부.

4. 지원제외

- 가. "금융기관 여신 운영규정"상의 대기업계열 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 나. 신청일 기준 휴.폐업중인 업체
- 다. 직전년도에 지원결정을 받고도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업체
- 라. 고창군에 공장등록 되어 있지 않은 업체
- 마. 융자상환기간이 종료된 후 12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
- 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 사. 기타 융자 대상자 선정이 불합리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대출취급기한

- 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 6. 대출취급은행 : 농협중앙회 고창군지부, 전북은행 고창지점

7. 융자대상 선정 및 통보

○ 고창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심의위원회 융자대상 적격여부 심의를 거쳐 지원결정 통보

8. 융자자금의 조기회수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때
-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때
-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9. 기타사항

- 자금 지원이 결정된 업체는 협약은행 융자 자금으로 대출되므로 채권보전(부동산, 신용보증서 등)이 필요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고창군 민생경제과(☎063-560-235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별지제1호서식】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신청서

1. 업 체 명:		
2. 공장소재지 :		
(주 사무소) :		
3. 대 표 자 :	(법인등록번호 :)
	(생년월일 :)

4. 융자신청액 : 금 원

5. 자금 용도 : 운전자금

6. 업체현황

업	종	분류번호(주생산품
공장구	구모	부지 : m²(제조시설 : m², 부대시설 : m²)
년간서	ህ አት	생산량 : (판매실적은 세무서 신고분)
11/11	87건	판매량 : (수출 : 천불)
종 업	원	명(생산직 : 명, 사무직 : 명)
<i>T</i> L	λĻ	백만원
자	산	(자본 : 백만원, 부채 : 백만원)
		○부동산 담보 ()
신청유형		○신용보증서 ()
		○ 주택담보 ()

상기와 같이 고창군중소기업육성자금을 융자신청 합니다.

붙 임: 1. 사업계획서 1부

- 2.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제표 (세무서장 확인)1부 (단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증명원)
- 3. 상담확인서 1부
- 4. 기타 지원대상 증빙서류(수출실적 증빙서류, 품질우수 인증서 등)1부. 끝.

2016년 월 일

신청자 기업체명:

대 표 자:

印

고 창 군 수 귀하

【별지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 1. 사 업 기 간 :
- 2. 사업개요:
- 3. 세부사업별 소요자금(산출근거)
- 4. 생산효과 및 수익성
- 5. 융자금 상환 계획
- 6. 기업운영실태
- 7. 기 타

201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⑩

※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상담확인서

업 체 명:

대표자:

대출예정금액:

워

위 업체는 금번 귀 군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당행과 사전에 상담을 하였음으로, 귀 군에서 자금지원 결정할 경우 지원결정된 금액 이내로 당행 내규 등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이내에서 대출취급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16년 월 일

대출취급 금융기관의 장

印

고 창 군 수 귀하

고창군 공고 제2016-47호

보상계획공고

『공설운동장 주변 주차장용 토지매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합니다.

2016. 1. 11.

고창군수

1. 공익사업의 개요

사 업 명	공설운동장 주변 주차장용 토지매입
사업시행자	고 창 군 수
사업구간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암리 346번지 일원
사업규모	A=5,593㎡ (8필지, 주차 125면)

2.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연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번		기년	/1¬	(m²)	2827	성명	주소
1	고창읍 월암리	349-1	전	139	139	박정훈	고창군 고창읍 석정1로 105,석정힐스 101동 401호
2	고창읍 월암리	349-2	답	552	552	박정훈	고창군 고창읍 석정1로 105,석정힐스 101동 401호
					3650/6311	박현규	고창군 해리면 구동호 2길 34
3	고창읍 월암리	349-20	대	1,696	2661/6311	박현성	고창군 해리면 구동호 2길 33
					3650/6311	박현규	고창군 해리면 구동호 2길 34
4	고창읍 월암리	349-21	대	1,237	2661/6311	박현성	고창군 해리면 구동호 2길 33

5	고창읍	346	답	686	457	조일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 대로 635-13,당감동 태화현 대아파트 201동 1503호
	월암리	347	답	710	229	조영삼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반송로 105, 반림동 럭키 반림아파트 16동 201호
6	고창읍				473	조일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 대로 635-13,당감동 태화현 대아파트 201동 1503호
	월암리				237	조영삼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반송로 105, 반림동 럭키 반림아파트 16동 201호
7	고창읍 월암리	348-2	전	291	291	하금희	고창군 해리면 구동호 2길 33
8	고창읍 월암리	461-2	구거	282	282	국(건설부)	
총 계				5,593	5,593		

3. 열람기간 : 2016. 1. 11. ~ 2016. 1. 25.(공고익일로부터 14일간)

4. 열람장소 : 고창군청 체육청소년사업소 체육시설팀(☎ 063-560-8914)

5. 보상시기 : 감정평가 후 개별 통지

6. 보상방법 및 절차

-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제1 항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 금액을 보상가격으로 결정하여 개별협의 하되, 같은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 금액을 보상가격으로 결정・협의합니다.
- 나.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 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 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 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양 식 및 작성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정평가 추천서]

토지소재지	편입지번	편입면적(m²)	소 유 자		인감날인	전화번호	감정평기업자
			주 소	성 명	· 단구 근 건	신작민오	TT 6 6 1 H

※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고 인감을 날인 (인감증명서 첨부)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7. 기 타

가. 보상계획을 토지소유자 등에게 개별 통지하나 수취인의 주소변경 등 으로

반송될 경우 본 공고로 통지에 갈음합니다.

나. 기타 보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체육청소년사업소(063-560)-8914)로 문의 하시기 바라며, 토지 및 지장물 조서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관계인은 동 열람기간내에 이의서(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 견 서

사업시행자의	고 창 군 수			
성명또는명칭	上 3 让 丁			
사업의 종류	공설운동장 주변 주차장용 토지매입			
사용 대상 토지				
및 물건				
의 견				

2016년 월 일

성 명: (인)

주 소:

고 창 군 수 귀중

※구체적인 의견과 증거서류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

고창군 자원봉사 종합센터 운영규정의 일부개정규정을 발령한다.

고창군수





2016년 1월 /3일

고창군 훈령 제 4//)호

고창군 자원봉사 종합센터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창군 자원봉사 종합센터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운영위원회 추천을 거쳐 군수에게 임명 제청한다"를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 군수가 임명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연임"을 "한 차례만 연임"으로, "운영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를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군수가 임명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운영위원회 추천을 거쳐"를 "신규임명의 경우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센터소장은 명예직으로 하고, 직원의 봉급은 연봉제로 행정자치부 자원봉사 센터 운영지침의 기본급 최저기준표에 따라 계약을 통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출장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 중 "지급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공고 제2016-75호

고창군금고 협력사업비 공고

『고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2의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고창군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8일

고 창 군 수

- □ 고창군금고 협력사업비 출연 현황
 - 1. 출연기간 : 3년(2016. 1. 1 ~ 2018. 12. 31)
 - 2. 협력사업비 출연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은행명	협력사업비(총액)	비고
1금고	NH농협은행 고창군지부	900	
2금고	전북은행 고창지점	81	

끝.

고창군 공고 제2016-100호

고창 군계획시설(도로. 광장)사업 공사완료 공고

고창군 고시 제2013-53호로 최초 결정되고 고창군 고시 제2013-68호로 실시계획인가 및 제2014-43호로 실시계획변경 인가된 「고창 일반산업 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고창군계획시설(도로, 광장)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률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고 창 군 수 2016년 01월 29일

- □ 공사완료 내용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고창군 고수면 봉산리 1148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고창 군계획시설(도로, 광장)사업(중로1-1303호, 광장1303호)
 - 명 칭: 고창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사업면적 : 41,574m²
 - 사업규모 : 중로1류(L=875m, B=20.05m), 광장(A=7,501m²)
 - 4. 사업의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고창군수
 - 주 소 :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 5. 사업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2015. 12. 31.
 - 6. 관련서류 : 고창군 민생경제과(☎ 063-560-2362) 또는 건설도시과 (☎ 063-560-25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창군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을 이에 발령한다.

고 창 군 수 박 후

2016 년 1월 26일

고창군 예규 제 1 호

고창군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각종 개발행위를 허가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국토교통부「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1-2-2, 1-2-3에서 위임하거나 정한 범위에서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자연경관의 훼손 등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 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고창군 계획 조례 및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농어촌도로로 결정 고시된 도로를 말한다.
 - 2. "자연취락지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자연취락지구(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으로 15호 이상)로 결정 고시

된 지역을 말한다.

- 3. "주거밀집지역"이란 자연취락지구 외에 5호 이상의 실제주민이 거주하는 인가가 밀집된 지역을 말한다.
- 4. "저수지"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마목의 저수지를 말한다.
- 5. "택지식 분할"이란 인·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형태만 갖추어 그 필지 에 접하게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 6. "바둑판식 분할"이란 인·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 형태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 7. "발전시설"이란 태양광 및 풍력발전 시설을 말한다.
- 8. "경계"란 사업부지 경계를 말한다.
- 9. "공유수면"이란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바닷가를 말한다.
- 제4조(개발행위하가 기간산정) ① 개발행위의 허가기간은 최대 2년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기간을 2년 이상으로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정하여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준공기한을 연기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한 차례에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두 차례까지만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성토 및 절토) ① 성토 및 절토 구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자연 사면을 유지하거나 자연석 또는 조경석 쌓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옹벽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도로 경사면은 원칙적으로 성토를 금지한다. 다만, 진·출입로 및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③ 부지 조성 시 주변 도로보다 높게 할 수 없다. 다만, 지형 여건상 성

토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부지 주변에 도랑 및 용·배수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 ④ 성토나 절토로 인하여 주변 도랑 및 용·배수시설에 피해를 끼쳐서는 아니 되며,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 다.
- 제6조(녹지공간 확보) ① 건축행위를 수반하는 개발행위허가 시 허가 부지에 주변 입목 및 경관과 어울리도록 녹지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② 녹지공간은 주변경관과 어울릴 수 있는 수종을 심어야 한다.
 - ③ 개발행위로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주요 도로나 토지 경계 부분은 가림식재를 하거나 차폐막을 설치해야 한다.
 - ④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건물이나 지붕에 대해서는 주변 환경과 어울리도록 그 형태 및 색상 등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토사반입 및 반출계획) 개발행위 사업장에서 성토나 절토로 토사를 1,000㎡ 이상 옮길 경우에는 다른 토지의 불법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토사반입 및 반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토지분할) ① 다른 법률에서 정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반시설 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토지를 택지식이나 바둑판식으로 분할하는 것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이미 택지식이나 바둑판식으로 분할된 토지의 재분할은 소유권 이전등기일부터 1년 이상 경과되어야 할 수 있다.
 - ③ 토지분할 허가기준을 회피하기 위하여 공유지분과 관련된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한다.
- 제9조(폐차장, 고물상 허가기준) ① 폐차장이나 고물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1. 자역취락지구 경계로부터 200미터

- 2.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100미터
- 3. 도시지역내 주거지역으로부터 200미터
- 4. 도로 및 공유수면으로부터 200미터
- 5. 저수지 상류 경계로부터 200미터
- 6. 관광지, 문화재, 유적지, 전통사찰, 서원 등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시설이나 공공시설(학교, 병원, 공동주택, 연수시설 등)부지 경계로부터 200미터
- ② 폐차장이나 고물상의 경계울타리는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제10조(발전시설 허가기준) ①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나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도로법」에 의한 도로로부터 500미터
 - 2.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로부터 200미터
 - 3. 공유수면으로부터 1,000미터
 - 4. 자연취락지구 경계로부터 200미터
 - 5.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00미터
 - 6.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의 중앙 부근
 - 7. 고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주요 관광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공공시설부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 8. 유네스코 고창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된 핵심구역 및 핵심구역 경계 로부터 500미터
 - 9.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 되었거나 등재 예정인 구역 내 및 구역 경계로부터 1,000미터

-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조, 통풍, 조망 및 경관 등 주변 토지이용과 건축물의 안전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 2. 자가소비용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 1.5미터 이상 경계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울타리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하고 차폐식재 및 차폐막 설치를 권고 할 수 있다.
- 제11조(군계획위원회 심의) 제9조부터 제10조까지의 허가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고창군 계획 조례에 따른 군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일 경우 민원처리의 합리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접수 또는 승인받은 시설은 이 지침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3조(기존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건축된 건축물은 이 지침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고창군 공고 제 2016 - 139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내지 15조 규정에 의거하여 「고창 역사문화관광지 연계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으신 지역주민과 이해 관계자께서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2. 1.

고창군수

1. 계획의 개요

계획명	위 치	연장(km)
고창 역사문화관광지	1구간 : 고창군 고창읍 월곡리 ~ 신림면 반룔리 일원	3.00
연계도로 개설공사	2구간 : 고창군 신림면 벽송리 ~ 부안면 운양리 일원	1.25

○ 사업시행자 : 고창군

○ 승인기관 : 국토교통부

2. 공람장소 및 기간

○ 공람장소 : 고창군 건설도시과, 고창군청 홈페이지(http://www.gochang.go.kr/)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 공람기간 : 2016. 2. 2. ~ 2016. 2. 26.(20일, 공휴일 제외)

○ 관계도서 : 공람장소에 비치(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초안 요약서)

3. 주민설명회 개최

계 획 명	일 시	장소	비고
고창 역사문화관광지 연계도로 개설공사	2016년 2월 3일(수) (11시)	신림면사무소	

4. 주민의견 제출

○ 제출기간 : 공람 시작일부터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

○ 제출방법 : 공람 장소에 비치된 소정양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서면 제출, 고창 군청 홈페이지(http://www.gochang.go.kr/) 또는 환경영향평가정 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에 의견 등록

-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창군청 건설도시과(☎ 063-560-25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초안 요약서 : 실음 생략

	주민의견 제출서	
사 업 명	고창 역사문화 관광지 연계도로 개설공사	
사업구간 위치	1구간 : 고창군 고창읍 월곡리 ~ 신림면 반호 2구간 : 고창군 신림면 벽송리 ~ 부안면 운약	-
사 업 자	고창군	8 년
	성명	생년월일
의 견 제 출 자	주소	전화번호
평가서 초안에 관한 의견		
공청회 개최에 관한 의견	-개최 필요성(해당하는 곳에√표 합니다:필요 -이유(개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
「환경영향평가 의견을 제출합니다.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평가서 초안의	내용 및 공청회 개최에 관한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고창군수 귀히	ł	

『명품위생업소 만들기 추진을 위한』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 사업자 모집 공고

고창군 공고 제2016- 145호

2016년도 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영업장, 조리장 등 영업에 필요한 시설개선 자금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일반음식점 사업자께서는 아래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량 : 10개소(일반음식점) (단위:천원)

≀ िल ⊓	시설개선		사업비		비고
사업명	시결계신	계	군비	자부담	41-1/-
시설개선자금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20,000	10,000	10,000	

- 2. '16년도 중점 추진지역
- 1차 선정지역 : 재래시장 부근 일반음식점 사업자
- 2차 선정지역 : 터미널 부근 일반음식점 사업자
- 3차 선정지역 : 관통도로 부근 일반음식점

※ 중점추진지역 신청업소가 10개소 이하인 경우 고창읍 소재지 전 지역으로 확대 실시

- 3. 사업자 신청기준
- 일반음식점 영업자 등록신고를 하고 5년이 경과된 사업자
- 최근 1년 동안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사업자
-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 시설개선 건물주의 동의를 받은 사업자
- 4. 신청서 접수기간 : 2016. 2. 3 ~ 2. 26
- 5. 신청시 구비서류

- 가. 위생업소 시설개선등 지원사업 신청서 1부(별지1)
- 나. 사업계획서 1부(별지2)
- 다. 자부담 확보 관련서류 1부.(자부담 예치금 통장사본)
- 라. 시설개선사업 건물주 사전 동의서 1부(건물주와 영업주가 다른 경우)
- 마. 영업신고증 1부.
- 6. 접 수 처 : 고창군 환경위생과 식품위생팀(☎560-2886)
- 7. 선정방법 : 고창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자 선정
-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군 환경위생과 식품위생팀(☎560-2886)에 문의 바라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016. 2.

고 창 군 수

[별지 제1호서식]

위생업소 시설개선 등 지원사업 신청서(제5조 관련)

(1915)	성 명		생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업 소 명		사업자	등록번호			
	소 재 지		I				
	대 표 자		저ㅎ	·번호	일반		
	-11 · · ·1			164	휴대		
업소현황	건물소유 형 태	□자가 □전	선세	□월세	□기타		
	업 종 (업소명)			영업의	형태	"한식, 중식,	경양식, 다류"기재
	시 설			업소주변	변 환경		원지, 인구밀집지 등″기재
	이용객 수 (1일평균)	명 무 가능	용 5인원		명	주이용객	"내・외부인"기재
	지원구분	□모범음식점	□좋은식	l단 실천G	법소 □식	품제조기공업	□기타()
지원요구	지원시설	□ 시설개선사업 □ 기타 음식문	-	. – –	지원사업)
	사 업 비	총 사업비	Ş	^刭 (지원신	······································	원, 자·	부담 원)
	신청사유		"사업	성목 적과	부합된 니	내용 기재"	
첨부서류	∘ 사업계획	니서 1부 (별지작성	격)				
고창군	·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리	례 제53 년	월	위와 급 일 청 인	같이 신청 힘	(인)
고창군수	-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제5조 관련)

업 소 명	사업자등록번호	5
소 재 지		
대 표 자	생 년 월 일	
1. 사 업 명 :		
2. 소요자금(실소요금액) :		
3. 신청금액 :		
4. 현황 (규모・시설)		
가. 규 모 :		
나. 시 설 :		
5. 사업계획내용		
명 칭	수 량	합 계
합계		
※ 별첨 견적서 참조		
6. 기 타:		
	년 .	월 일
	신청인	(인)
철 부 : 견적서 사본 1부		

(별지 제9호 서식)

시설개선사업 건물주 사전 동의서

O 업 소 명:

O 주 소:

O 건 물 주: (인)

O 보조사업자: (인)

위 업소는 시설개선사업의 보조금을 군과 보조사업자의 부담으로 시설을 개선하여 깨끗하고 청결한 업소로 나아가고자 건물주의 사전 동의를 받아 시설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 건물주와 보조자는 5년 이내에 사업장을 승계하거나 영업장을 옮길 시에는 보조금 환수조건에 따를 것을 동의함.

- 보조금의 비율 -

(단위: 천원)

구 분	총 액	군 비	임대인	비고
시설개선사업	20,000	10,000	10,000	50%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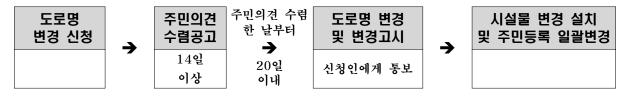
고창군 공고 제2016 - 149호

고창군 도로명 변경 등에 대한 의견 수렴 공고 「도로명주소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7조의4에 의거 도로명 변경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3일

고 창 군 수

- 1. 공고기간 : 2016. 2. 3 ~ 2. 17 (15일간)
- 2. 공고장소 : 군청 홈페이지, 군 및 읍 · 면 게시판
- 3. 대상도로 현황
 - 도로명 변경 : 1개 구간 (성내관동길)
- 4. 관계서류 및 열람 장소
 - 관계서류 : 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 · 변경조서
 - 열람방법 : 군 홈페이지, 종합민원과 방문 열람
- 5. 의견제출 기간과 방법
 - 의견제출기간 : 공고기간 내
 - 방문접수 : 고창군청 종합민원과
 - 팩스접수 : 063) 560 2409
 - 우편접수 : (56428)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고창군청 종합민원과
- 6. 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 요건 및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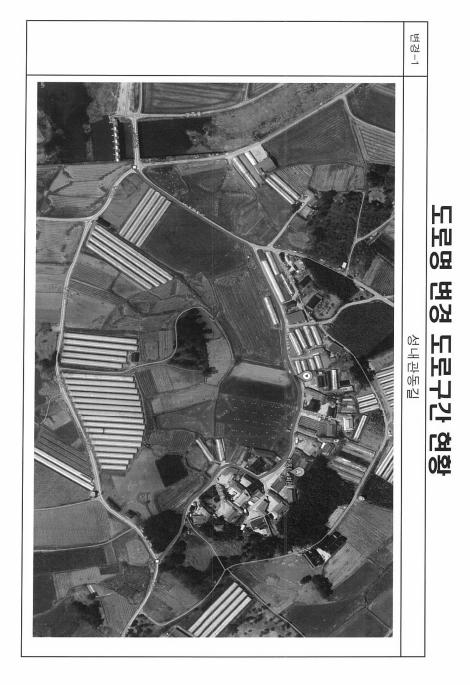
※ 문 의 처 : 고창군청 종합민원과 지적팀(☎: 063-560-2414)

도로명 부여 및 변경에 따른 의견 제출서

"변경" - ○○ "부여" - ○○					
도 로 명	도로명(안)				
T T 0	제안사유				
	도로구간 위치	시점	면 리 번지	종점	면 리 번지
도로구간	도로망도	※ 공	고된 도로구간과 다 제출시면		구간을 의견으로
	제안사유				
기타사항					

 6개 대표	200000	rg rg	
NA		원 실	
성내관동 일	묘		
623	길이(m)		
4	폭(m)	田	
성내면 신성리 산10-6	기점	경전 도로현황	
성내면 신성리 934	야 다 보		
신성 라 당 길	무로명		н
623	길이(m)		11-1 20 24-2
4	폭(m)	변경	l Hr
성내면 신성리 산10-6	기절	경우 도로현황	:도구간 무여·면
성내면 신성리 934	아시		변경 조서
20m	간격	7 本	
1→64	변경전	刀素	
1→64	변경후	사면	
고 면 생 장	0 D	_	
년 양 년	五 十 二 十 0		
성내면 성내관동길로 행정구역 명칭인 "성내"가 중복되어 불편 항	부여,변경 사유	년 원	
	<u>-</u>	<u>E</u> J	다 % 나

1



고창군 공고 제2016-163호

국외부재자신고 접수 전자우편 주소 재공고

「공직선거법」제218조4 제3항 따라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국외부재자신고 접수를 위한 전자우편 주소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 이미 국외부재자 신고를 마친 신청자께서도 반드시 재공고 전자우편으로 재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2월 일

고창군수인

- 1. 전자우편 주소 : gochang@korea.kr
- 2. 접수기간 : 2015. 11. 15. ~ 2016. 2. 13.
 - ※ 전자우편으로 신고·신청하는 때에는 자신의 신고서만 할 수 있음.

국외부재자신고 안내문(예시)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하시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 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15년 11월 15일	~ 2016년 2월 13일(91일간)
------------------------	----------------------

□대상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 신고를 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 제 출 처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제출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 신고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전자우편, 서면(우편 또는 인편)으로 신고

※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O 국외부재자신고서
- O 여권사본
 -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이용한 신고의 경우 여권사본은 제출하지 않음.

고창군 공고 제2016-177호

고창 군계획시설(유원지,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전 열람공고

고창군계획시설(유원지, 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같은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고창군청 건설도시과(2063-560-2565)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고 창 군 수 2016년 02월 19일

1. 실시계획인가 내용

구분		종류 및 명칭	사업 시행지	규모 또는 면적(㎡)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비고
	종 류	명 칭	71 % 71	전격(III)			
	군계획시설 (유원지)	고창 복분자테마유원지 조성사업	부안면 용산리 591번지 일원	A=165,371.5m ²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고창군수	실시계획인가일 ~ 2018.12.31.	
당초	군계획시설 (유원지)	고창 복분자테마유원지 조성사업(1단계)	부안면 용산리 591번지 일원	A=153,917.8m²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고창군수	실시계획인가일 ~ 2015.08.31.	1단계
32	군계획시설 (유원지)	고창 복분자테마유원지 조성사업(2단계)	부안면 용산리 591번지 일원	A=3,439.8m²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고창군수	실시계획인가일 ~ 2016.12.31.	2단계
	군계획시설 (유원지)	고창 복분자테마유원지 조성사업(3단계)	부안면 용산리 591번지 일원	A=8,013.9m²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고창군수	실시계획인가일 ~ 2018.12.31.	3단계
	군계획시설 (유원지)	고창 복분자테마유원지 조성사업	부안면 용산리 591번지 일원	A=165,371.5m²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고창군수	실시계획인가일 ~ 2018.12.31.	
변경	군계획시설 (유원지)	고창 복분자테마유원지 조성사업(1단계)	부안면 용산리 591번지 일원	A=149,234.6m ²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고창군수	실시계획인가일 ~ 2016.04.30.	1단계
건경	군계획시설 (유원지)	고창 복분자테마유원지 조성사업(2단계)	부안면 용산리 591번지 일원	A=8,123.0m²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고창군수	실시계획인가일 ~ 2016.12.31.	2단계
	군계획시설 (유원지)	고창 복분자테마유원지 조성사업(3단계)	부안면 용산리 591번지 일원	A=8,013.9m²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고창군수	실시계획인가일 ~ 2018.12.31.	3단계
당초	군계획시설 (도로)	고창 복분자테마유원지 조성사업	부안면 용산리 86-7번지 일원	L=756m, B=20m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고창군수	실시계획인가일 ~ 2018.12.31	
변경	군계획시설 (도로)	고창 복분자테마유원지 조성사업	부안면 용산리 86-7번지 일원	L=756m, B=20m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고창군수	실시계획인가일 ~ 2018.12.31	변경 없음

-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지장물)조서 : 별도첨부
- 3. 열람(의견제출)기간 : 공보게재 다음날로부터 14일간
- 4. 열람(의견제출)장소 : 고창군청 건설도시과
- 5. 관계도서: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 6. 의견제출 :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건설도시과 (063-560-25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9 20 20 21 22 22 22 23 23 23 23 23 33 33 33 33 33 의 관 외 에 18 H 소재지 **[**|0 마마마마마마마 四 ㅁ 용 (수 的 小 の (対 (対 (対 (対 (対 . ОН 자테마유원지 지번 (당초지번) 749-36 749-37 749-40 749-40 749-40 749-41 749-43 749-45 749-5 749-6 759-5 759-7 759-7 759-9 759-9 759-9 759-9 759-9 759-9 759-9 759-9 749-29 749-30 749-31 749-31 749-32 749-33 749-3 749-3 749-3 749-3 749-28 749-28 조성사업 라무상면적 (㎡) 49.5 25.2 ,253.3 94.4 377.3 22.8 73.3 477.1 30.2 82.6 38.2 47.9 묘 편입면적 (m^{*}) ᅜ 25.2 ,253.3 94.4 377.3 22.8 73.3 104.5 176.7 83.1 165.9 249.2 13.6 15.9 8.6 129.7 192.6 78.1 345.0 30.2 49.5 30.0 무롱교로누 0소 0묘 1> 40 KF ㅗ 1> 0소 0묘 0 $\mathsf{K}\mathsf{F}$ 얖 1> 巾 교 ш 인의 10 K10 UIE ᄱ 두용 대 대 대

邻 旧 사용할 토지세목(유원지)

•

CH0 사묘

첫

ᄣ

75	74	73	72	71	70	69	68	67	66	65	64	03	62	61	60	59	58	57	56	55	54	53	52	51	50	49	48	47	46	45	44	43	42	41	40	39	38	四	인 대
しまい	고 장 단	고장단	는 자 다	니 장 단	는 사항 나	는 사 다	니 장 난	고 창 군	는 야 다	병	I 는 야 I 다	병병	는 사 사		니 장 다		고장군	니 장 대	는 장 대	고 장 단	는 사 사	는 사 나	는 장 대	는 장 대	는 하 대	고 창 군	고 장 군	고 장 군	고 장 단	고 창 단	는 하 다	고 창 군	고 장 단	고 장 단	고 장 군	고 장 군	고 장 군	÷ ∴	
10 11	양	일	양	양	면만	유	양	양	면	면	12	면	연	유	면	유	마	양	유	양	양	면	양	t승 네I	연	약	면	양	t5 세	양	면	양	면	면	임	임카	임파	[[0 [묘	소재지
사용	多个	ᅉ	상	수기	岭	용산	용 산	岭	0¢0 r≥	040 12	0k0 r≥	0¢0 r≿	양산	양수	수	야수	够体	邻仁	ф (4)	송	용다	양수	용산	용수	ø 1,≥	够广	용산	야수	송	ф (4)	왕	용산	용산	용산	용산	够	0¢0 Γ.≱	· 아	
749-14	749-51	749-13	749-12	749-50	749-11	749-49	749-10	749-9	749-48	749-47	749-46	749-8	749-45	749-44	749-7	759-18	759-47	759-17	759-16	759-15	759-14	759-46	759-45	759-44	759-43	759-42	759-41	759-13	759-40	759-39	759-38	759-37	759-36	759-35	759-34	759-12	759-11	(당초지번)	지 변
U U	田田田	田田	出	유	유	됐	出	H	H	H	H	H	出	田田田	出	H	유	유	HI HI	阳田	표	유	유	임유	유	유	임아	양유	H	H	五五	田田	出	田田田	된	田田田	H H	(말 (말 (말	出
0 EVC	90.8	297.5	16.8	12.5	420.8	178.2	76.4	251.3	31.8	458.9	121.0	262.4	25.3	27.7	697.4	493.5	50.4	784.8	181.3	125.2	49.4	2,422.9	1,313.3	847.9	41.6	264.9	844.6	29,371.6	12.2	30.5	997.7	22.6	100.6	114.9	103.4	2,091.4	91.2	공부상면적 (㎡)	四
242 0	90.8	297.5	16.8	12.5	420.8	178.2	76.4	251.3	31.8	458.9	121.0	262.4	25.3	27.7	697.4	493.5	50.4	784.8	181.3	125.2	49.4	2,422.9	1,313.3	847.9	41.6	264.9	844.6	29,371.6	12.2	30.5	997.7	22.6	100.6	114.9	103.4	2,091.4	91.2	편입면적 (㎡)	אַנ
	뉴울픈 골논	뉴울 핀వ논	고창군	고창군	고창군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라북도	고창군	는 하 다	고창군	다 청 다	고창군	고창군	고창군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군	부울 때 코 논	고창군	부울匝쿸돈	고창군	고창군	고창군	고창군	고창군	노청단	고창군	고창군	고창단	고장다	고장다	무정다	사	나 장 나 장	고창군	부물匝코두	성명	
1							1000																																H>
																																						KF	¥
																																						⊬	
																																						0소 0묘	
																																						K⊦ ≺+	이 해 관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면
																																						= -	J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유원지)

에 IZ		소재지		Z Z Z Z E E E E E E E E E E E E E E E E					수 유 자		0	와 만
型 (例	· 대	(1) (묘	아 - 다	STEEL SECTION AND ADDRESS OF THE PERSON AND	(물건	라무상면적 (㎡)	편입면적 (㎡)	位 20	KF <1		0소 0묘	
76	고창군	무안	ø Г.↓	749-15	된	32.7	32.7	무롱 따 코 논				
77	는 장 다	마	0¢0 Г.≱	749-16	노나	88.4	88.4	무롱 교 코 두		1		
78	나 장 다	임	® ¢	749-52	노무	56.6	56.6	부울匹쿨눈				
79	고창군	양	용산	749-53	무거	35.3	35.3	부용교로논				
80	고창군	임	œ 仁	749-54	누거	111.0	111.0	무물 때 코 논				
81	고창단	면	야수	749-55	구거	86.6	86.6	남왕교코논				
82	고 참 군	다 낸	용수	749-56	누거	19.8	19.8	나올 때 되 논		- 1		
83	고창군	양	용산	749-17	アナ	120.2	120.2	나올而 3 논		- 1		
84	고창군	임	송	749-57	노	14.4	14.4	- 18 교 모		- 1		
85	니 장 건	얼	的个	749-58	노나	25.4	25.4	나 왕 而 돌 눈		- 1		
86	고창군	면	晚 	749-18	잡종지	84.4	84.4	고창군		- 1		
87	고창군	임	용산	749-59	잡종지	15.6	15.6	고창단		- 1		
88	는 사 사	양	的 仁	749-19	田田田	28.3	28.3	나올而 되논				
89	는 하 다 장 다	면	(A) (△)	749-20	田田田	24.3	24.3	고장다				
90	고창단	연	® \∴	43	αĊ	365.9	365.9	고		- 1		
91	고창군	양	0¢0 r≱	43-12	αŌ	863.4	863.4	고창다				
92	나 청 나 나 하	양	0¢0 r≿	43-1	ᅜ	1,433.6	1,433.6	고창군				
2 93	기 다 다 다	I 40	0 12 12	43-13	! [≿	2,576.4	2,576.4	고 장 대				
9 4	나 많다	유 다 연 다		43-14	ת רצ	281.9	281.9	I 사이 교 나이 교				
96		연)(A)	43-15	-N	240 7	240 7	H 교 H 교 H 대				
97	고창군	무연	양산	43-16	明田	25.5	25.5	무용대로 무				
98	고 장 군	면	ф ¦	43-17	된	139.5	139.5	+올而코논				
99	고창단	면	하	43-18	阳田	45.3	45.3	부롱亚로논				
100	고창군	양	岭	43-19	阳	76.7	76.7	무롱교롱부				
101	고 장 군	인	야 다	43-4	됐	4,849.0	4,849.0	는 장 다				
102	고 장 단	양	송	43-5	αĊ	17.2	17.2	고창군				
103	고창군	양	的 仁	43-8	전	871.6	871.6	고창군		- 1		
104	고 창군	압	ө 스	43-20	전	11.2	11.2	다 જ				
105	고창군	유	90 ∆	43-21	전	840.0	840.0	고				
106	고창군	마	용산	43-10	ద	1,148.6	1,148.6	고창단		- 1		
107	고 장 군	tö 1Œ	용	43-22	전	30.3	30.3	고창군				
108	고 장 군	다 네	용산	43-23	전	200.4	200.4	고창군		- 1		
109	니 장 단	양	용산	44-3	대지	209.1	209.1	고창군				
110	고창군	임	용산	44-53	대지	427.1	427.1	다 한 디		- 1		
Ξ	고창군	약	岭		자 유 소	522.2	522.2	고창군				
112	는 장 다	유	여 (수		주유소	351.4	351.4	고창군				
13	는 하 나	P P	b →	14-30	N	1.285.0	1 285 0	こまこ		-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유원지)

150	149	148	147	146	145	144	143	142	141	140	139	138	137	136	135	134	133	132	131	130	129	128	127	126	125	124	123	122	121	120	119	118	117	116	115	114	四例	IZI IDI
나 W H H	는 야 대	는 장 대	다 당 다	다	나	는 하 다	병양	는 야 다	는 상 대	는 장 단	고창군	고창군		고창군	고장군	고 장 단	고 장 단		고 장 단	고창군	고 장 군	고창군	고창군	고 장 단	고창군	고 장 단	는 하 다	는 사 사	는 다 양 다	고창군	고창군	는 다 장 다	기 장 대	고장군	고창군	고창군	· ⊞	
유	양	유	면	면	약	양	마	면	양	유	t 네	양	유	유	유	유	연	양	양	유	양	면만	유	면	임카	입	면	양	임	면	무만	유	유	약	양	양	[[0 모]	소재지
# GB C≯	命户	岭	岭	0¢0 r≱	0¢0 (∠	0¢0 r≥	0¢0 r≿	0¢0 r≥	的公	00 (∴	的个	야수	아 수	040 ∴	040 []	0¢0 Γ≱	(A)	송	多个	邻仁	용산	양산	的公	용산	용산	용산	용	용산	용산	용산	够公	용산	용산	的广	多个	야	· 다	
49-12	49-11	49-6	49-10	49-5	49-9	49-8	49-4	46-1	45-5	45-8	45-4	45-7	45-6	45-2	44-52	44-51	44-50	44-49	44-48	44-47	44-46	44-45	44-44	44-43	44-42	44-41	44-40	44-39	44-38	44-37	44-36	44-35	44-34	44-1	45-1	44-29	(당초지번)	
n Hn	된	H	H H	H	H	원	원	전	되	H	出出	HI HI	HI HI	田田田	ద	ద	ద	전	ഥ	ద	ഥ	ద	ద	ద	ద	ᅜᅺ	ᅜᅺ	ഥ	ద	ద	凶	전	전	ഥ	ഥ	사 유 수	(말건	出上
77.1	31.1	146.9	12.4	34.5	22.6	2.8	103.1	218.7	107.9	2.2	173.9	3.7	34.3	307.6	138.8	325.0	312.9	137.1	1,572.4	4,938.1	4,683.2	2.1	2.9	87.7	8,950.7	969.9	150.7	568.3	192.4	2,886.1	1,534.5	4,549.9	22.1	1,061.1	731.6	0.6	공부상면적 (㎡)	田
77.1	31.1	146.9	12.4	34.5	22.6	2.8	103.1	218.7	107.9	2.2	173.9	3.7	34.3	307.6	138.8	325.0	312.9	137.1	1,572.4	4,938.1	4,683.2	2.1	2.9	87.7	8,950.7	969.9	150.7	568.3	192.4	2,886.1	1,534.5	4,549.9	22.1	1,061.1	731.6	0.6	편입면적 (m²)	ᅜ
十多正型先	부물匹코두	부물교로논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라북도	고 장 단	전라북도	부울핀코두	부울亚쿸두	고창군	고창군	고창군	고창군	고창군	고창군	고창군	고창군	고창군	고창군	고창군	고창군	고창군	고창군	고 장 도	노	고	고창단	고총다	고 장 단	고창다	사	고창군	고창군	고창군	성 연	
																																					KF -{-	☆ ₩ ₩ ₩ ₩
																																					0호 0묘	dese
																																					KF <1	이 해 관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면
																																					E E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유원지)

에 핀 뙤 에 173 174 177 177 177 177 177 177 177 177 179 180 181 181 183 183 183 183 184 185 156 157 H 소재지 화 화 화 화 화 **II**|0 묘 민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 ОН 지번 (당초지번) 50-11 53-6 54-1 54-2 54-3 54-5 54-7 56-4 56-5 56-3 59-4 62-7 565-2 565-2 566-2 566-2 566-2 566-3 지 목 (물건 종류) 라무상면적 (㎡) 970.7 27.4 135.4 135.5 256.5 124.4 59.4 59.4 22.9 106.7 837.6 1.2 124.7 1124.7 1175.5 111.2 265.1 1111.4 1111.4 104.5 2.7 560.1 49.1 49.1 35.3 258.9 四 ᅜ 虚 (폐) 4.4 807.6 7.2 108.7 13.0 7.5 111.4 104.5 2.7 560.1 49.1 35.3 19.3 837.6 27.4 135.4 256.5 124.4 59.4 22.9 106.7 265.1 , 175.5 124.7 90.7 0소 0묘 1> 10 KF ¥ 1> 0소 0묘 0 KF 옏 1> 庐 교 권리의 恕罪 ᄱ 땅 디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유원지)

B 사 명

고 장

복분자테마유원지

조성사업

의 피 220 221 222 223 223 224 225 226 227 218 212 213 214 215 216 217 199 200 201 202 203 203 204 205 206 206 208 208 209 209 210 196 196 198 190 191 192 H 소재지 [[0 임카 양 양 四 민 90 00 00 00 全 全 47 47 . ОН 지번 (당초지번) 593-1
593-1
597-1
597-2
597-3
597-3
597-4
602-5
602-6
602-7
750-11
750-12
759-21
759-23
759-24
759-23
759-24
759-28 593-5 593-6 591-1 591-2 593 749 때 때 때 때 때 책 첫 첫 वर्ठ वर्छ वर्छ वर्छ वर्छ वर्छ वर्छ 라무상면적 (㎡) 148.1 73.3 23.5 5.0 5.0 2.360.3 2.75.7 7.686.8 11.309.2 194.1 194.1 1984.2 998.8 639.2 2.178.8 639.2 2.178.8 5.213.4 105.5 92.9 9.2 105.5 105.6 17.8 83.7 46.0 624.9 265.3 113.7 28.1 50.1 112.6 76.4 668.7 ,384.8 12.1 四 団 ᅜ 2,178.8 5,213.4 105.5 92.9 7.9 7,686.8 1,309.2 194.1 984.2 83.7 46.0 624.9 265.3 113.7 28.1 50.1 112.6 76.4 998.8 639.2 125.8 103.0 ,360.3 ,692.5 668.7 148.1 73.3 23.5 5.0 17.8 ᅜ 다 다 다 다 다 다 다 생 % % % % % 사 다 다 다 다 다 다 0소 0묘 1> 40 KF ス 1> 0소 0묘 0 KF 엪 1> 庐 교 권리의 10 恕罪 ᄱ 品 대 고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유원지)

•

망 사 명

고 장

복분자테마유원지

조성사업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유원지)

지번 본 전 연 적 당초지번 (물건 공부상면적 편임 종류) (㎡) (㎡ 749-21 잘종지 183.7 749-23 잘종지 614.3	지반 목 면 적 초지번 (물건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성당 749-21 집중지 340.7 교황 749-22 집중지 183.7 교황 749-23 집중지 614.3 집장	지반 목 전 면 적 조치번 (목건 공부산면적 편입면적 성당 (휴건 (m²) (m²) (m²) 249-21 전종지 183.7 고창 749-22 전종지 183.7 183.7 고창 749-23 전종지 614.3 10.8	지 면 작 선명 자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지 면 적 물건 이부산면적 편일 (m') (m 8조지 183.7 8조지 614.3 8조지 78.5	무지 면 적 편입면적 (m') (m') (m') 340.7 340.7 340.7 183.7 183.7 183.7 614.3 61	지 면 적 소 유 자 달건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 하기 (m') (m') 성명 주 8지 340.7 340.7 고창군 8지 183.7 고창군 8지 614.3 183.7 고창군 8자 78.5 78.5 고창군	지 면 적 소유자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면 적 [면적 편일) (m 340.7 [83.7 614.3 614.3	면 적 편일면적) (m') 340.7 340.7 183.7 183.7 78.5 614.3 78.5 139.6 139.6	면 적 소유 자 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 (m') 240.7 고창군 183.7 고창군 183.7 고창군 181.3 12창군 181.3 12창군 181.5 78.5 고창군	면 적 소유자 이 (m') 성명 주소 성명) (m') 시원군 183.7 고왕군 1614.3 1614.3 고왕군 78.5 78.5 고왕군 199.6 139.6 고왕군
		요요 소 유 자	소 유 자 성명 고향라 고향라 1 고향라 1 고향라 1 고향다 1 2 2 2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수 유 자 주 수 성명 주 수	요 사 와 사	왕 사 비	
수 유 자 주 수 성명 주 수	이 해 관 계 인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	왕 라 라 권리의 종류 및 도	면 원 유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2		
	꾸퓽 보 든 사용말 도시세폭(노도)	

에 되 원 행 51 50 53 52 47 49 48 46 45 4 43 42 4 40 39 38 37 36 35 34 33 32 $\frac{3}{2}$ 고창군 고창단 고참다 고 장 군 니 장 군 고 장 군 고 장 다 는 자 자 고창군 고장군 고창군 고 창 군 고창군 고장군 고 장 단 고장군 고창군 고장군 고창단 소재지 [[0 양 얼 유 양 인 양 임 임카 일 (일 기 임카 양 임카 유 양 양 악 양 임카 양 양 양 四 낕 ᅉ 命 용 산 岭 的个 的 양산 的个 ᅉ 용 산 010 Γ.≿ 양수 邻仁 용산 的个 的 的 的广 ᅘ 邻公 的公 ᅉ 的八 . ОЮ 지번 (당초지번) 산18-15 산18-20 산18-14 86-26 86-7 178 570-4 산63-3 609-3 60-13 755-1 753-2 609-1 산177 753-1 60-12 756-1 산63 60-1 60-2 750-7 59-3 59-6 59-5 月子(年) 노나 음 된 出出 임유 노 田田 E 유 노 H 노노 <u>유</u> 노 αō αĎ 조기 [천 조 [뇌 조기 조기 사업 라 무 상 면 적 (m) 42,854.0 10,927.0 3,426.0 1,337.0 7,225.0 1,202.8 928.0 1,062.9 564.0 202.0 178.0 285.0 793.0 628.0 328.6 161.0 784.0 91.0 87.6 42.6 80.0 95.7 四 19.0 변 (mi) 면 전 전 以 1,055.9 ,472.0 1,063.0 38.0 176.0 197.0 ,473.0 , 100.0 135.0 558.0 538.0 654.0 390.0 42.0 56.0 56.0 91.0 25.0 2.0 49.0 14.0 75.0 19.0 1.0 국토교통부외1인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무용교로 두 무용교로도 무용대코도 부울핀코노 부물파코논 부롱핀코두 무용 교 코 두 무롱 교로 눈 **뉴울**굔3논 부물교코두 부물교코두 무용 교 코 두 부물핀코논 무롱띠코누 **남용편** 물논 무용판 코도 무롱교롱부 으 소 (사 0소 0묘 +> 고 장 다 40 는 하 의 ᅺ KF 월곡뉴타운2길 44 1> 고창농업협동조합 位 位 日 고창군 0 고 하 마 옢 1 보릿골로 1> 巾 124 ᆋ [0 권리의 근저당권 TL사리 Kło Ur ᄤ 두 H H

邻 HA (|r 사용할 토지세목(도로

H0 사명

년 장

복분자테마유원지

大 20

고창군 공고 제 2016 - 178호

고창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일괄정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2 일

고 창 군 수

고창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정비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법령에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바, 상위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조례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O 상위 법령에 근거 없는 별지 서식의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

3.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u>2016년 3월 3일 까지</u>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고창군수(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명단(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 나. 의견제출할 곳 : 우564-28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고창군청 기획예산실 규제개혁팀 (전화 063-560-2243, FAX 063-560-2259)
-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 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문의사항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기획예산실 규제개혁팀 (전화 063-560-224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	भ	
입법예고명	고창군 주민	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	정비 조례	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 호	
기신 개발기	주 소			
	검.	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고창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하고자 합니다.

201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고 창 군 수 귀하

고창군 공고 제 2016 - 179호

고창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일괄정비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2일

고 창 군 수

고창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정비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법령에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바, 상위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규칙의 주민 등록번호 수집 서식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O 상위 법령에 근거 없는 별지 서식의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

3. 의견제출

○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u>2016년 3월 3일 까지</u>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고창군수(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명단(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 나. 의견제출할 곳 : 우564-28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고창군청 기획예산실 규제개혁팀 (전화 063-560-2243, FAX 063-560-2259)
-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 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문의사항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기획예산실 규제개혁팀 (전화 063-560-224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	भ	
입법예고명	고창군 주민	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	정비 규칙] 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 호	
의선 제출자	주 소			
	검			

「고창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정비 규칙안」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하고자 합니다.

201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고 창 군 수 귀하

고창군 공고 제 2016 - 203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내지 15조 규정에 의거하여 「고창 역사문화관광지 연계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으신 지역주민과 이해 관계자께서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2. 16.

고창군수

1. 계획의 개요

계획명	위 치	연장(km)
고창 역사문화관광지	1구간 : 고창군 고창읍 월곡리 ~ 신림면 반룡리 일원	3.00
연계도로 개설공사	2구간 : 고창군 신림면 벽송리 ~ 부안면 운양리 일원	1.25

○ 사업시행자 : 고창군

○ 승인기관 : 국토교통부

2. 공람장소 및 기간

○ 공람장소 : 고창군 건설도시과, 고창군청 홈페이지(http://www.gochang.go.kr/)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 공람기간 : 2016. 2. 17. ~ 2016. 3. 12.(21일, 공휴일 제외)

○ 관계도서 : 공람장소에 비치(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초안 요약서)

3.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명	일 시	장소	비고
고창 역사문화관광지 연계도로 개설공사	2016년 2월 25일(목) (14시)	신림면 반룡마을회관	

4. 주민의견 제출

○ 제출기간 : 공람 시작일부터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

○ 제출방법 : 공람 장소에 비치된 소정양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서면 제출, 고창 군청 홈페이지(http://www.gochang.go.kr/) 또는 환경영향평가정 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에 의견 등록

-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창군청 건설도시과(☎ 063-560-25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초안 요약서 : 실음 생략

	주민의견 제출서	
사 업 명	고창 역사문화 관광지 연계도로 개설공사	
사업구간 위치	1구간 : 고창군 고창읍 월곡리 ~ 신림면 변 2구간 : 고창군 신림면 벽송리 ~ 부안면 원	
사 업 자	고창군	- 장디 달전 -
	성명	생년월일
의 견 제 출 자	주소	전화번호
평가서 초안에 관한 의견		
공청회 개최에 관한 의견	-개최 필요성(해당하는 곳에√표 합니다:필. -이유(개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면	•
「환경영향평가법 의견을 제출합니다.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평가서 초안의	내용 및 공청회 개최에 관한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고창군수 귀하		

고창군 공고 제2016 - 213호

고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2월 일

고 창 군 수

고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5.11.11.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사항과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건의 공정한 평가를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안 제2조의3) 나.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안 제2조의4)

3. 의견제출

- 가.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1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고창군수(종합민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명단(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 다. 의견제출할 곳 : 우585-700/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고창군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

(전화 063-560-2421 FAX 063-560-2439)

-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 전화 · 팩스 ·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떤 방법이든 가능함
- 마.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 조기정 (전화 063-560-242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고창군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하고자 합니다.

201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고 창 군 수 귀하

고창군 공고 조례 제2016-213호

고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1을 제2조의2로 하고, 제2조의3 및 제2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2조의4(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5.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u>제2조의1</u> (생 략) <u>제2조의2</u> (현행	제2조의1와 같음)
① 위원회 위:	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할 수 있고, 위원회는 결정한다.이 경우 기피

현행	개 정 안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
	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
	당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회피하여
	<u>야 한다.</u>
<u><신 설></u>	제2조의4(위원의 위촉 해제) ① 군수
	는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
	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
	의 사유로 위촉위원의 직을 유지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u>인정되는 경우</u>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
	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
	오 5.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5. 제2소의2제1양 각 오의 역을 하 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u> 커럭 다시 작년 경구</u>

고창군 공고 제2016-223호

고창 군계획시설(운동장)사업 공사완료 공고

고창군 고시 제2015-90호로 실시계획변경 인가된「고창 실내야구장 및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고창군계획시설(운동장)사업이 완료됨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고 창 군 수 2016년 02월 26일

- □ 공사완료 내용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고창군 고창읍 월암리 102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고창 군계획시설(운동장)사업(실내야구장, 주차장, 운동장)
 - 명 칭: 고창 실내야구장 및 주차장 조성사업
 -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사업면적 : 35,244m²
 - 사업규모 : 실내야구장(A=2,123m²), 주차장(A=5,979m²), 운동장(A=27,142m²)
 - 4. 사업의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고창군수
 - 주 소 :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 5. 사업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2016. 06. 30.
 - 6. 관련서류 : 고창군 체육청소년사업소(☎ 063-560-8922) 또는 건설도시과 (☎ 063-560-25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창군 공고 제2016 - 263호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열람기간과 장소 등 공고

「공직선거법」제40조 제3항 및 제218조의10 제1항에 따라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열람기간과 장소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일

고창군수

1. 선거인명부 열람

가. 열람기간 : 2016년 3월 5일부터 2016년 3월 9일까지(공휴일에도 열람 가능)

나. 열람시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인터넷 열람은 열람시간에 제한이 없음)

다. 열람장소 : 주민등록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 읍 • 면사무소

장 소 명	소 재 지	비고
	별 지 기 재	

- 라. 인터넷 열람 홈페이지 주소: www.gochang.go.kr
- 마. 인터넷 열람방법
 - ① 고창군 홈페이지(www.gochang.go.kr) 접속
 - ② 배너존에서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열람 바로가기' 선택
 - ③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앞 6자리와 뒤 3자리 입력 후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조회' 선택

[별 지]

장 소 명	소 재 지	비고
고창읍사무소	고창군 고창읍 모양성로 26	
고수면사무소	고창군 고수면 고인돌대로 1412	
아산면사무소	고창군 아산면 녹두로 786	
무장면사무소	고창군 무장면 녹두로 6-8	
공음면사무소	고창군 공음면 공음길 35	
상하면사무소	고창군 상하면 상하로 84-11	
해리면사무소	고창군 해리면 청해2길 38	
성송면사무소	고창군 성송면 대성로 770	
대산면사무소	고창군 대산면 대성로 273	
심원면사무소	고창군 심원면 심원로 211	
흥덕면사무소	고창군 흥덕면 문화2길 27	
성내면사무소	고창군 성내면 시기2길 6	
신림면사무소	고창군 신림면 신림로 136	
부안면사무소	고창군 부안면 인촌로 1246	

고창군 공고 제2016 - 266호

「고창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고창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고창군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일

고창군수

1. 자치법규명 : 고창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2. 구 분 : 제정

3. 제정이유

고창군 식품위생업소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영업자의 위생업소 시설설비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효율적인 위생관리 체계 구축과 안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4. 주요내용

- 가.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함 (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적용대상을 정함 (안 제3조)
- 다. 업종별 시설기준 및 옥외영업의 시설기준을 정함 (안 제4조)
- 라. 식품접객업의 영업자의 자격기준을 따로 정함 (안 제5조)
- 마.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절차를 정함 (안 제6조)
- 바. 옥외영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7조)
- 사. 특례적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8조)
- ※ 고창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규칙은 폐지함
- 5. 제정 규칙안 : 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6년 3월 23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고창군 홈페이지 주소 : http://www.gochang.go.kr)

다. 기재내용

1)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2)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의견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제출기관 : 고창군 환경위생과 식품위생팀

1) 주 소 :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고창군청 환경위생과

2) 전 화: 063-560-2865

3) FAX: 063-560-2869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 칙 명 : 고창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	여부		의 견		ul –
	찬	성	반	대	의 선	견	비고

고창군 규칙 제 호

고창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위생업소의 시설 설비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효율적인 위생관리체계 구축으로 식품의 안전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①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1. 식품제조ㆍ가공업
 - 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영업
 -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 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 2. 즉석판매제조 · 가공업

-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 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으로서 농어촌체 험·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거나 지역 농림수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즉석식품을 제조·판매·가공하는 경우
- 3. 식품소분·판매업 :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장소에서 농·수·축산물의 판매행위를 하는 영업

4. 식품접객업

-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 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 나.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공원·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 업을 하는 경우
- 다.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 라.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 마. 고창군수가 인정하는 축제 또는 행사장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 위를 하려는 경우
- 바.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단,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축제행사의 경우 그 행사기간 으로 하다.)

- 사.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② 옥외영업 적용 특례는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 2.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전라북도지사가 지정한 관광단지
- 3.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전라북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 4.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가목의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을 영 위하는 장소
- 5.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옥외영업장으로 지정한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 제4조(시설기준)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영업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1과 같다.
 -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이하 "옥외영업자"라 한다) 는 별표2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5조(자격기준) 제3조제1항제4호마목부터 사목까지에 따른 영업신고자의 자격기준은 군의 행사 및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 또는 단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참여하는 식품접객업으로 한다.
- 제6조(신고 등) ① 제3조제1항제4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영업 신고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에 대하여 신고조건 및 영업기간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 및 보완요구를 할 수 있다.
- 제7조(옥외영업자의 책무) 옥외영업자는 옥외 영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옥외 영업시간 이외에는 옥외의 모든 시설물을 옥내에 정리하여야 한다.
- 2. 영업시간 후 옥외영업공간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옥내에서 정리하여야 하고, 옥외영업 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3. 옥외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 개선하여야 한다.
- 제8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설기준 및 옥외영업 적용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1.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 3.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고조건 및 영업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4. 군수가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제9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등 관련 법령을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고창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 고창군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서

신 고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고' 인	주 소	전 화 번 호
여	명칭(상호)	
영 업 업 소	소 재 지	
소 	영업기간	

「고창군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고창군수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 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1. 취급음식 종류 1부.		
	2. 건강진단서 1부.		
제출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		00.00001
서류	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	수수료 	28,000원 (수입증지)
	우만 해당합니다)		(165-1)
	4. 서약서 1부.		
	 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유의	· - · - · · - · · · · · · · · · ·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항	을 부과하게 됩니다.	–	
, 0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힘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서 약 서

〈규칙 제4조제1항 관련〉

○ 상 호:

○ 성 명 : ○ 생년월일 :

○ 소재지 :

상기 업소의 영업주는 고창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및 아래 영업신고 조건을 준수하고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 신고증을 고창군에 자진반납(폐업신고)할 것을 서약합니다.

[영업신고 조건]

- 1. 가격표에 의한 정당한 음식가격제시 및 친절 서비스제공과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기준 준수
- 2. 식품의 원재료 국내산 사용
- 3. 남은음식 재사용 안하기
- 4. 음식점 원산지 표시
- 5. 위생종사자 건강검진 실시 후 업소내 건강검진 결과서 보관
- 6. 위생종사자는 위생복 및 위생모 반드시 착용
- 7. 화재발생을 대비하여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배치
- 8. 고창군의 제반 지시사항을 철저히 이행

20 년월일위 서약인주 소성 명

(인또는서명)

고창군수 귀하

[별표 1]

영업 종류별 시설기준(제4조제1항 관련)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 가.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이하 "건물"이라 한다)
 - 1) 건물은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외부의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 2)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작업장

- 1)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가공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장기간 식품을 제조하지 않을 경우 식품 (농산물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식품제조시설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 2)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제조 공정의 특성 따라 분리,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구분(선·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하도록 한다.
- 3)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장 등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 가)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하다.
- 나)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 다)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 식성 등을 가지고, 세척·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 라) 가), 나), 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을 사용하지 않는 제조공정 등특성에 따라 내수성이 아닌 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

- 4)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 환기가 가능하고 제품과 제조 공정에 따라 환기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5)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식품취급시설 등

제542호

- 1)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2)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급수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마. 화장실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창고 등의 시설

작업장 또는 인근에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또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창고에 갈음할 수 있는 냉동·냉장시설을 따로 갖춘 업소에서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 검사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 [별표 14] 1. 사에 따른다.

아. 운반시설

식품을 운반하기 위한 차량, 운반도구 및 용기를 갖춘 경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은 인체에 무해하며 내수성·내부식성을 갖추어야 한다.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가. 건물

- 1) 건물은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외부의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 2)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작업장

- 1)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식품제조가공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다만, 장기간 식품을 제조하지 않을 경우 식품 (농산물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식품제조시설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 2)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 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제조 공정의 특성 따라 분리, 구획(칸막이· 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구분(선·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하도록 한다.
- 3)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장 등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 가)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나)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 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 다)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 식성 등을 가지고, 세척·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 라) 가), 나), 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을 사용하지 않는 제조공정 등특성에 따라 내수성이 아닌 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
- 4)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 환기가 가능하고 제품과 제조 공정에 따라 환기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5)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식품취급시설 등

- 1)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2)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급수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마. 판매시설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진열·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바. 화장실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식품소분·판매업의 시설기준

가. 공통시설기준

- 1) 작업장 또는 판매장(식품자동판매기영업·유통전문판매업을 제외한다)
- 가) 건물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주거장소 또는 식품소분·판매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 나)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 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제조 공정의 특성 따라 분리, 구획(칸 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구분(선·줄 등으로 구분하 는 경우를 말한다) 하도록 한다.
- 2) 급수시설(식품소분업 등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화장실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

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업종별 시설기준

- 1) 식품소분업
- 가) 식품 등을 소분 · 포장할 수 있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 나) 소분·포장하려는 제품과 소분·포장한 제품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한다.
- 2) 식용얼음판매업
- 가) 판매장은 얼음을 저장하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나) 판매장 주변은 배수가 잘 되어야 한다.
- 다) 소비자에게 배달 판매를 하려는 경우에는 위생적인 용기가 있어야 한다.
- 3) 식품자동판매기영업
- 가) 식품자동판매기는 위생적인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나) 더운 물을 필요로 하는 제품의 음용온도는 68℃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자판기 내부에는 살균등(더운 물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정수기 및 온도계가 부착되어야 한다. 다만, 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자판기 안의 물탱크는 내부청소가 쉽도록 뚜껑을 설치하고 녹이 슬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 4) 유통전문판매업
- 가)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나)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 시설은 영업신고를 한 영업소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 5)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 가) 사무소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나) 작업장

식품 선별은 서늘한 곳에서 위생적으로 보관하거나 선별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창고 등 보관시설

- (1) 식품 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시설은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 할 수 있다.
- (2)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는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냉장·냉동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냉장·냉동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라) 운반차량

- (1) 식품 등을 위생적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허가, 신고 또는 등록한 영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운반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운반차량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 (2)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냉장 또는 냉장시설이 필요 없는 식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운반차량에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6) 기타 식품판매업

냉동시설 또는 냉장고·진열대 및 판매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냉장·냉동 보관 및 유통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제품을 취급할 경우는 제외한다.

4.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가. 영업장

- 1)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되어야 한다.
- 2)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조리장

- 1)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 시설·세척시설·폐기물용기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 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 2) 주방용 식기류 등을 소독하기 위한 열탕세척소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3)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급수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화장실

청결하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경우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2]

옥외영업장의 시설기준(제4조제2항 관련)

- 1. 옥외영업장의 면적은 신고한 영업장과 같은 대지 내의 영업장 신고 면적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옥외 시설에서 조리 시설 설치 및 조리는 불가하며, 영업장 내에서 조리·가 공한 음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 3. 옥외영업장의 시설은 고정 구조물이 아닌 차양, 파라솔, 식탁, 의자 등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 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세척 및 소독이 용이한 재질이어야 한다.
- 4. 상기 규정된 시설물 이외의 어떤 시설도 추가로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5. 옥외영업장 시설물은 「건축법」, 「도로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도 로 메 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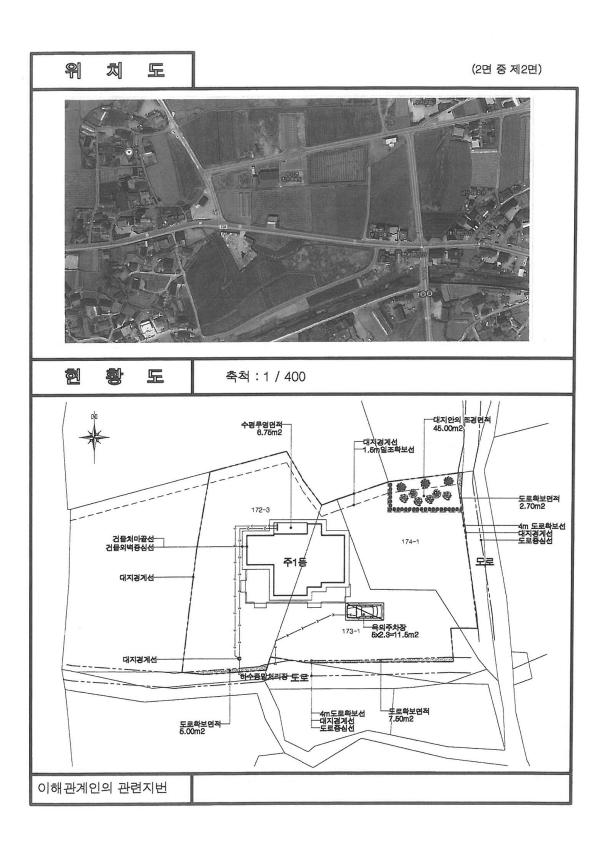
대지위치	전북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지	번	173-1외2필지
건 축 주	이 길 동	주민등록번호	300628-	허가(신	<u> </u>	
도로길이	62 m	도로너비	4.0 m	도 로	면 적	15.20 m2
이해관계인	인 동의서		•			

아래 부분을 건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지정함에 동의합니다.

* 지정된 도로는 건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인정됩니다.

관련지번	동의면적(m2)	동 의 일 자	토지소유자	주민등록번호	서명 또는 인
173–1	7.50 m2	2016. 02. 15.	이 길 동	300628-1	(9)
174-1	2.70 m2				
172-3	5.00 m2				
			1.10	1.	-

작성자:직급시설 8성명 봉원 등 (서명 또는 한) 확인자:직급시설 8성명 정 개민 (서명 또는 한)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1.4.1>

도로대장

지정번호		INDIFFERENCE PROPERTY.	-11 0		(2면 중 제1면)
대지위치 고창	고 부안면 수남리			지번 427-1	
건축주 고정애		1	또는 법인등록번호)	허가(신고)번호	
도로길이		도로너비)4월15일	도로면적	
이해관계인동의서	23.5 m		4 m		27 m²
\$150 PER PROPERTY AND PROPERTY		다른 도로로 지정함 에 따른 도로로 인			
관련지번	동의면적(m²)	동의일자	토지소유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서명 또는 인
427-1	27	2016.2	고 정 애	1957년04월15일	
					739
	,,,,,,,,,,,,,,,,,,,,,,,,,,,,,,,,,,,,,,,				
-					
		작성자 : 직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m^{*}]

(서명 또는 인)

성명

확인자 : 직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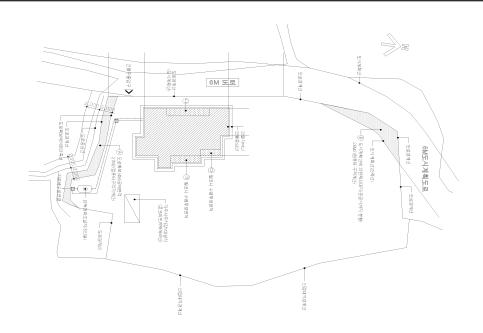
(3면 중 제2면)

위치도 및 현황도

• 위치도 및 현황도를 작성합니다.



위치도 축 척 <임 의>



현황도 축 척 [] 1 / 600, [] 1 / 1,200